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법학전문석사 학위논문

베른 협약의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법적 쟁점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김 소 연

베른 협약의 추급권 조항의 국내 입법과 법적 쟁점

지도교수 정 상 조

이 논문을 법학전문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김 소 연

김소연의 전문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2월

위 원 장 박 준 석 (인)

부위원장 박 상 철 (인)

위 원 정 상 조 (인)

국문초록

미술품이 최초로 판매된 후에 원저작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작품에 관하여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출판물이나 음원과 같은 상품과 달리 미술품은 원본이 복제품보다 큰 경제적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소위 굶주리는 예술가들을 위해 후속 매매에서도 일정한 비율의 이익을 원저작자가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바로 추급권이다.

추급권, 또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은 프랑스에서 최초로 고안된 지 한 세기가 지난 개념으로, 원저작자가 시각예술품이 최초로 양도 이후에도 재판매로부터 일정 비율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다. 1971년에는 문학 및 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규정되어 가입국들의 추급권 도입을 촉구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추급권 조항 자체를 입법하여야 하는 법적 강제력은 없이 국내법으로 제정할 일정한 재량을 부여받았다. 아울러 한-EU FTA에 발효되면서 다수의 EU국들이 도입한 추급권을 한국 역시 입법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FTA 체결 이후 2년 내에 다시 협의하기로 하였음에도, 그 후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구체적인 도입 방향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도입이 다시 논의된 계기는 다름 아닌 기술의 발전에 있다. 최근 급성장하는 NFT 미술품 시장에서 재판매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NFT 미술품에 한하여 현실적으로 계약상 추급권이 주장되고 그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고 있다. 기존에 법정 추급권이 제도화된 나라에서도 NFT 미술품과 법정 추급권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나아가, 최근 정부 주도로 미술계의 다양한 문제를 조망하고 법제화하려는 「미술진흥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고 그 중 추급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고는 추급권의 국내 입법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하는 법적 쟁점을 논의해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에 우선 첫째, 추급권 도입 논의의 출발점인 추급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본다. 미국의 판례를 기초로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권리소진이론과 추급권의 관계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다. 또, 사후저작권에 관련된 프랑스 헌법평의회 결정과 대법원의 판례를 분석해 사후추급권 관련 조항의 강행규정성을 밝히고 이를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추급권 도입의 법적 근거인 베른협약 조항의 문언을 해석하고, 형식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국내입법 방법을 고찰해본다. 특히 NFT 미술품 계약상 추급권이 거래에 통용되는 현 상황에서 추급권을 '계약권'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셋째, 실체적 관점에서 추급권이 도입된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더해 우리나라와 같이 도입이 아직도 논의 중인 중국와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프랑스, 영국, 독일과 같이 추급권이 도입된 국가 사례를 분석해 적용대상 구체화, 처벌규정 도입 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한다. 나아가,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도입논의 국가 중 중국의 사례를 미국의 논의와 함께 분석해 위임방식, 중앙 관리단체의 중요성 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추급권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의무자에 관한 입법례를 분석하고, 최근 프랑스 대법원의 판단 및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규정한 EU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이를 국내입법으로도 달리 정할 수 있고 약관으로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현안으로 대두되는 NFT 미술품 계약 상의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법정 추급권 조항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올해 논의된 미술진흥법 법안에 관한 연구를 분석하여 실효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여 향후 입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어 : 추급권, 재판매보상금청구권, 베른협약, 국내입법, NFT, NFT 미술품

학 번 : 2019-24818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 동기 ····· 1

제 2 절 연구 목적 ····· 3

제 2 장 추급권의 개념 ····· 4

제 1 절 의의 및 성격 ····· 4

1. 연혁 및 도입과정 ····· 4

2. 의의 ····· 7

가. 용어 ····· 7

나. 예술가 간 평등 ····· 8

다. 미술 시장 이해관계자 간의 평등 ····· 9

라. 권리소진이론과의 관계 ····· 9

마. 미국 종결권과의 관계 ····· 13

바. 소결 ····· 14

3. 법적 성격 ····· 15

가. 학설 ····· 15

나. 사후 추급권의 강행규정성 ····· 17

다. Salvador Dali 사건 (VEGAP v. ADAGP) ····· 19

라. 소결 ····· 21

4. 경제학적 성격 ····· 21

제 2 절 베른 협약 및 국내입법 ····· 23

1. 체결 연혁 ····· 23

2. 추급권 조항 및 해석 ····· 25

3. 국내입법 방법 ····· 28

가. 베른협약 성립 이후의 국제사회의 노력 ····· 28

나. 베른협약 발효 이후 추급권 도입 논의 과정 ····· 29
다. 우리나라 미술시장 ····· 30
라. 추급권 도입에 대한 반대론 ····· 31
마. 국내도입 방법 ····· 32

제 3 장 추급권 도입 해외 사례 ····· 37
제 1 절 도입 국가 ····· 37
1. 프랑스 ····· 37
2. 영국 ····· 39
3. 독일 ····· 42
4. 시사점 ····· 44
가. 적용대상 ····· 45
나. 적용기간 ····· 45
다. 추급권료 추심기관 및 수급과 지급 ····· 46
라. 처벌규정 유무 ····· 46
제 2 절 도입 논의 국가 ····· 48
1. 미국 ····· 48
가. 캘리포니아 주 추급권법 ····· 48
나. 연방법 도입 시도 ····· 49
다. 소결론 ····· 50
2. 중국 ····· 51
가. 중국 내 추급권 도입 찬반 의견 ····· 51
나. 중국 저작권법에 추급권 조항 입법 시도 ····· 52
3. 시사점 ····· 54

제 4 장 추급권 조항의 실효성 제고 ····· 56
제 1 절 지급의무자 ····· 56
1. 지급의무자 규정에 관한 해외 입법례 ····· 56

2. 지급의무자에 관한 판결 ····· 60
3. 판결에 대한 평가 ····· 64
제 2 절 추급권 도입과 NFT 미술품 계약 ····· 69
1. NFT 미술품 시장 속 추급권 ····· 69
가. NFT 미술품 시장 ····· 69
나. NFT 미술품 시장의 성장 및 가능성 ····· 69
다. NFT 미술품과 재판매보상금 ····· 70
2. NFT 미술품 계약과 추급권 조항의 조화 ····· 71
가. NFT 미술품계약에서의 추급권의 법적 의미 ····· 71
나. 추급권 도입 국가에서의 논의 ····· 71
다. 추급권 미도입 국가에서의 논의 ····· 73
라. 도입될 추급권 조항과의 충돌 ····· 75
마. 계약상 채권으로서 추급권의 의의 ····· 76
제 3 절 국내 입법안 ····· 78
1. 국내 입법 현황: 미술진흥법 법안 ····· 78
가. 미술진흥법안 연구 ····· 78
나.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내용 ····· 79
2. NFT 미술품 계약과의 조화 ····· 80
3. 입법안 제시 ····· 80

제 5 장 결론 ····· 83

부록 ····· 85
참고문헌 ····· 88
Abstract ····· 95

표 목 차

[표 1]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권리 내용 ····· 33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동기

음원을 들을 때마다 작곡가, 작사가, 가수 등은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소설가 역시 소설의 유통과정에서 계속 수익하는 구조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미술 작품은 이와 다르다. 박수근이 헐값에 팔았던 작품은 현재 수백 억 원을 호가하지만, 그와 그의 유족들은 그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이처럼 생전에 가난함 속에서 예술을 꽃피운 작가들의 신화적인 이야기는 감동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모종의 불편함을 자아낸다.

추급권, 혹은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은 미술 작가가 작품의 소유권을 양도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수많은 매매에 대하여 수익 일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추급권의 역사는 무려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프랑스에서 최초로 도입된 추급권 제도는 낭만주의적 시선에서 굶주린 예술가들을 돕기 위한 호소적 목소리에 힘입어 제도에 안착하였고, 약 100년이 조금 지나지 않은 현재 약 90여 개국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추급권의 도입은 약 20년간 조금씩 논의되어 왔다. 현실적으로 한국 미술시장이 성숙하지 못해 위 제도를 운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미술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나아가 가장 큰 미술시장인 미국이 여전히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급권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찬반 논의를 더욱 심화하는 것보다, 베른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EU-FTA를 통해 추급권을 국내에 입법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더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NFT 미술시장에서 추급권이 계약상 채권으로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역으로 법정 추급권 제도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

기한다. 이에 구체적으로 추급권이 도입된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을 논하고 관련해 실효적인 입법 방법 및 구체적 내용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 2 절 연구 목적

국내의 기존 선행연구는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관련된 입법 동향, 그리고 관련된 소수의 판례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추급권의 시작부터 마주한 현안까지의 법적 쟁점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 입법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째, 추급권의 역사와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한다. 특히 관련된 판례를 해석하여 추급권과 관련해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소개함과 동시에 추급권의 법적 의미를 재조망하도록 한다. 추급권 도입 논의가 지속된 미국에서 권리소진이론과 추급권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두 판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에 더해 프랑스에서 강행규정으로 파악되는 사후추급권을 살펴보고, 현재 추급권이 저작인격권보다는 일종의 사회보장적 재산권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둘째, 추급권이 어떻게 국내에 도입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자세히 살핀다. 우선 베른협약상의 문언을 충실히 해석해, 우리나라가 추급권 조항에 관해 처음으로 조약을 맺어 국내에 입법하게 된 그 당시 추급권의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국내에 입법될 경우 가능한 형식을 살펴본다.

셋째, 해외 사례를 분석해 입법할 때 고려할 조항의 내용을 검토한다. 이미 추급권이 도입된 국가들과 도입을 논의하는 중인 국가들의 법 규정을 분석한다. 특히 선행연구가 주목하지 않았던 중국이 현재 미술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하여, 중국에서 이루어진 추급권과 관련된 논의 및 저작권법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넷째, 추급권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급의무자에 관한 최근의 프랑스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나아가, 현재 추급권이 다시 논의되는 중요한 계기인 NFT 미술품 시장에서의 재판매보상금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술진흥법안에 관한 연구와 토론회에서 진행된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해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에서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입법안을 제시한다.

제 2 장 추급권의 개념

제 1 절 의의 및 성격

1. 연혁 및 도입과정

추급권(*droite de suite*), 또는 재판매권(resale right)이라는 개념은 미술품 시장이 비교적 성숙한 프랑스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프랑스에는 16세기부터 미술품을 공개 경매하였으며, 1789년의 혁명과 19세기의 산업 발전은 미술시장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미술시장 성장을 이끌었다.[1] 지금보다 무려 한 세기 이전인 1893년에는 파리의 문학 잡지인 *La Chronique de Paris*에는 Albert Vaunois라는 변호사가 시각 예술가들과 음악인들의 불평등한 상황을 제기하면서 추급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2] 이 당시 추급권은 음악가들과 달리 시각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의 독창성은 복제품이 아닌 오로지 원작에 있다는 생각에서 발전하였다.[3] 추급권(追及權)은 원작이 매도될 때마다 원작 가치의 일정 비율을 원작자에게 돌려주어, 원작자가 자신의 작품의 경제가치를 '뒤쫓아서 따라잡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추급권의 탄생 배경에는 19세기 말에 빈곤한 예술가와 사후에 급등하는 예술작품과의 대조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이 있었다.[4] 특히 미술 작가

---

1) 이혜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8), 28면.

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p. 16.

3) Krestinger, Marilyn J., "Droit de Suite: The Artist's Right to a Resale Royalty", 15 Hastings Comm. & Ent. L.J. 967 (1993), 967면.

4) Price, Monroe E., "Government policy and economic security for artists: The case of the Droit de Suite." Yale LJ 77 (1967), p. 1335.

들이 기타 예술가들보다 불평등하다는 시각을 갖게 된 주요한 계기는 Jean-Louis Forain의 한 판화의 이야기가 유명하다. Forain의 <굶주리는 미술가(Starving Artist), 1920>이라는 석판화가 프랑스의 한 신문에 실린 후에 예술가에 대한 동정 여론을 근거로 하여 추급권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5)]

나아가 이러한 낭만적인 배경은 19세기에 다음과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했다. 첫째, 예술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오로지 예술가의 생의 끝자락 또는 사후에 나타나며, 둘째, 이렇게 가치가 뒤늦게 발생하는 원인은 대중의 이해와 호응에 필요한 시간적 간극을 꼽을 수 있으므로, 셋째, 예술가는 자신의 빈곤한 상태로 대중의 교육에 기여하는 것이고, 넷째, 이는 부당한 처사이고, 다섯째, 결국 새롭고 민감한 시장이 예술가를 마침내 발견했을 때 예술가는 이익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개진되었다.[6)] 이렇게 빈곤한 예술가와 빈곤에서 피어난 예술작품이 시장에서 외면당하는 낭만적인 서사는, 추급권이라는 일종의 사회보장적인 권리를 법제화하도록 하였다. 예술작품 원본의 진실한 가치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필요한 그 기간을 추급권이라는 일종의 세금으로 조정하게 된 것이다.[7)] 현대의 추급권은 위와 같은 낭만적인 성격을 넘어 직업인으로서 예술가를 보호하는 하나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다.

추급권이 프랑스에서 처음 법제화된 것은 1920년 5월 20일이며, 이를 필두로 벨기에(1921년), 독일(1965년), 덴마크(1990)년에 차례로 추급권이 입법되었다. 프랑스에서 입법화된 후 한 세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국내법을 보다 국제적인 맥락에서 입법하기 위한 시도는 1928년 로마에서 이루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1928년에 로마에서 열렸던 베른협약 개정 회의에서 추급권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1948년에 정식으로 제14조의2(14*ter*)[8)]로

---

5) 이혜민, 앞의 글, 29면.
6) Price, Monroe E., 앞의 글, p. 1335.
7) Price, Monroe E., 위의 글, p. 1336.
8) 현재 개정된 14조의3

채택되었다.

그러나, 베른협약의 규정들에 따라 체결국 사이에서 일괄되게 추급권을 인정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과 선택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약의 내용과 체결국의 수의 부족에 따라 추급권을 유럽 외의 다양한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권리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EU는 EU 가입국 사이에서 추급권이 통일적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원저작물 저작자의 이익을 위한 재판매권에 관한 2001년 9월 27일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2001/84/EC 지침"[9]을 채택하여 각 회원국 사이에 상이한 규정에 조화를 꾀하였다.

이 지침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위 지침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법률과 규칙 및 행정적 규정 등을 개정하고 발효시키게 하도록 국내 입법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이 의무화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추급권을 처음 도입하는 EU 회원국의 국내시장에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다.[10]

위 지침의 이행기간은 2006년 1월 1일까지였는데, 유럽공동체 예술가 재판매권 규칙(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은 지침에 따라 국내입법을 완료하지 못한 국가라도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EU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였고, 이로써 EU에서 추급권은 하나의 공동체 규범으로서 바로 적용되었다. 특히 새로운 2006년 지침은 2001년 지침과 달리 자국의 이익과 반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유럽 내에서는 통일적인 지침 하에 재판매권의 도입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11]

이상으로 추급권의 발생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결국 추급권은 프랑스에서 태동한 개념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법제화되기에 이

---

9)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10)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2014), 103면.

11) 위와 같음.

르렀는데, 이를 국제적으로 더욱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베른협약이 체결되었고, EU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한 지침을 통하여 추급권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추급권이 같은 내용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EU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해 EU 내의 입법 과정과 관련 판례를 참고할 가치가 있다. 베른 협약을 체결한 우리나라 역시 추급권을 국내로 도입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자세한 과정을 살피기 전에 추급권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2. 의의

상술한 바와 같이 추급권은 시각 예술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빈곤에 대한 낭만적인 시각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EU 내에서는 하나의 사회보장적 권리로 법제화되었다. 추급권이 법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성격을 살펴보고, 의미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급권과 대척점에 있는 저작권의 소진이론과 비교하고, 유사한 권리인 미국의 종결권을 소개하도록 한다.

가. 용어

우선 추급권과 재판매권, 혹은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자면 다음과 같다. 추급권은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에 대해서 저작자가 그 원작품을 양도한 후에 발생하는 매매 이익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12] 한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로 '추급권(追及權)'은 프랑스 지식재산권 법에 규정된 *Droite de Suite*를, '재판매권', '재판매보상권', '재판매 로열티'는 EU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Resale Right를 번역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권리로서 논의될 때에는 '추급권'이라는 단어를, 청구권으로서 논의될 때에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12) 캐슬린 킴, 『예술법』, 학고재 (2013), 103면.

한다.

나. 예술가 간 평등

추급권은 예술가들 사이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전하였다. 시각 예술은 다음과 같은 특성에 따라 기타 예술과의 불평등이 발생한다. 우선, (i) 시각 예술은 문화 산업에서 다른 예술 생산품과는 달리 작품이 한 번 판매되면 작가는 그 작품이 향후에 사용·수익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못한다. 오히려 통상 기타 물건과 다르게 미술 저작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저작물의 상승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원작의 구매자 또는 전매자는 일종의 부당이득을 취한다고 설명할 수도 있다.[13] 복제권과 실연권 등의 권리로 지속적 수입을 얻는 다른 예술가들(소설가, 작곡가 등)과 달리 재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사용가치도 누리지 못하는 시각 예술가들의 불평등한 처지를 고려하여 추급권, 혹은 재판매권 또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었다.[14] 물론 시각 예술 작가도 복제권, 배포권 등을 행사하여 이차적 저작물 시장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여전히 원본 자체를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주된 경제적 수익의 원천이다.[15]

나아가 (ii) 다른 예술작품과 다르게 시각예술품은 원본이 복제품보다 가치가 월등히 크며,[16] 예술 저작물은 수요가 제한적이라 다른 저작물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원저작자들이 받는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17] 음악, 영상, 출판물 등의 예술작품은 이를 쉽게 복제하여 똑같은 내용의 가치를 시장에 유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제품이 팔릴 때마다 원작

13) 안경환,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추급권”, 계간 저작권 제1권 제4호 (1988), 31면.
14) WIPO(주 2), p. 16.
15) 박경신,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2호 (2018), 240면.
16) Krestinger, Marilyn J., “Droit de Suite: The Artist's Right to a Resale Royalty”, 15 Hastings Comm. & Ent. L.J. 967 (1993), p.968.
17) 캐슬린 킴, 앞의 책, 104면.

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보상이 법에 보장되어있다.[18] 이와 달리 시각 예술품은 복제품의 가치는 원작에 미치지 못하며, 원작자가 원작을 한 번 판매한 후에 그 원작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익분이 없다. 게다가 미술품 원본의 소유자에게는 전시권 행사가 제한되고 별도의 대여권이 인정되지 않아서, 원저작자에게는 미술품 자체로부터 일회적이고 종국적으로 첫 판매만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얻게 된다.

다. 미술 시장 이해관계자 간의 평등

추급권은 기타 예술가들과의 평등뿐만 아니라, 미술품 시장에서 후차 매매의 매도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보상청구권이기도 하다. 특히 미술품의 가치 상승에는 판매 이후 원저작자가 축적한 명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원저작자가 그러한 이익기여분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향후 이를 재판매하는 주체들이 이에 편승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다. 이러한 공급구조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19] 이러한 불합리한 수익 귀속을 해결하기 위해 추급권이 고안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라. 권리소진이론과의 관계

(1) 권리소진이론과 추급권에 관계

셋째, 추급권은 시각 예술품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저작권의 권리소진 이론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권리소진이론(exhaustion of rights),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양도한 이후에는 배타적인 배포권을 잃고 향후 양수인의 행위를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20] 이는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배포권을 당해 저작물의 첫 번

18) 저작재산권으로서 저작권법 제 16조 내지 제 22조에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규정되어 있다.
19) 나강, 앞의 글, 10면.

째 배포 이후에도 계속 인정한다면, 저작물의 거래나 이용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원칙이다.[21]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0조에서 권리소진의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되는 등 방법으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원저작자는 원작품을 배포할 권리를 가지나, 이후 원작품이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원저작자가 배포할 권리는 소진되고, 배포 받은 자는 이미 배포권자의 허락을 받았으므로 이를 계속하여 배포할 수 있는 것이다.[22]

권리소진원칙은 최초 판매 이후 저작권자의 저작권 사용을 그만두게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소진되는 대상은 저작권자의 지분적 배포권일 뿐이고 어떠한 경제적인 권리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다.[23] 오히려 추급권은 통상의 기타 저작물과 같이 그 이용 허락에 따라서 지급하는 로열티가 아니라, 작품 원본 자체의 판매가 원저작자의 유일한 수입원이 된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그 원저작자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는 일종의 지분권으로 볼 수 있다.[24] 따라서 추급권이 도입된다면, 저작권법의 권리소진이론에 대해 시각예술이라는 범위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2) 미국에서의 논의 및 판례의 태도

---

20) 이동기・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22권 1호 (2009), 53면.

21)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31면 참조, 이윤정,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7), 132면 각주 18에서 재인용.

22) 저작권법상 ‘배포’의 의미는 동법 제2조 제23호에서 “저작물 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 로 정의되어 있다.

23) 이윤정, 앞의 글, 134면.

24)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7), 7면.

이에 관련된 미국의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저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나 다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최초판매원칙을 규정하고 있다.[25] 최초판매원칙의 예외로서도 추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다른 저작물의 저작권자에 비해 시각 저작물의 작가만을 우대하는 결과를 낳아 형평에 반한다고 주장한다.[26]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시각 예술저작물과 달리 다른 저작물은 통상적으로 원본에의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시장 구조에서 원저작자가 원본이 아닌 복제품 및 실연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기타 저작자들에 비해서 현저히 불합리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시각 예술가들에게 어떠한 '우대(favor)'를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다른 경제적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일종의 '예외'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추급권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거래 비용만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27] 추급권은 저작물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나 수수료로서 작용할 뿐이고, 단순히 임의규정(default rule)이기 때문에 합의로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28] 이에 대해 미국 저작권청은 음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영리적인 대여를 금지하는 연방저작권법의 규정을 예시로 들며 최초판매원칙에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추급권도 예외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29]

추급권을 권리소진이론의 예외로써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 미국의

25) 17 U.S.C. § 109(a).
26) U.S. Copyright Office, "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U.S. Copyright Office (2013. 12.), p. 58.
27) 김경숙,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의 동향", 고려법학 통권 제76호 (2015), 45면.
28) U.S. Copyright Office, 위의 글, p. 58.
29) 김경숙, 위의 글, 46면.

Morseburg v. Balyon(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한다)[30]과 Close v. Sotheby's, Inc.(이하 '후행 판결'이라고 한다)[31] 판결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선행사건에서 원고는 캘리포니아 주법(California Resale Royalties Act, 이하 'CRRA')에 따라 미술 작품을 판 거래상이 화가들에게 추급권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 거래상은 캘리포니아주법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미국 제9순회항소심법원은 연방저작권법이 캘리포니아주법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1976년 개정 전인 1909년도 저작권법에는 추급권 조항이 없었기에 CRRA와 저작권법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3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이후 사건인 Baby Mosse Drawings, Inc. v. Dean Valentine et al.[33]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34]

그러나 후행 판결에서는 CRRA가 1976년도 저작권법에 의해 '선취(preempted)' 되었다고 하여 선행판결과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캘리포니아주 밖의 미술작품 판매를 규제하는 조항이 캘리포니아주 밖의 미술품 거래도 규율하게 되어 주 간의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 3호가 명시적으로 '연방의회'에 '외국과의 통상 및 주 상호 간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므로, 캘리포니아 주법이 주간 상거래를 규율하게 되는 추급권 조항은 통상조항 위반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CRRA가 저작권법[35]의 권리소진원칙에 반하며, 선행판결은 권리소진이론을 명시한 Kirtsaeng v. John Wiley & Sons, Inc.,[36] Quality King

---

30) Morseburg v. Balyon, 621 F.2d 972 (9th Cir.), cert. denied, 449 U.S. 983 (1980)

31) Close v. Sotheby's, Inc., 894 F.3d 1061 (9th Cir. 2018).

32) Lorie M. Graham &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s First Sale Doctrine and the Policy Against Restraints on Alienation", 7 Tex. A&M L. Rev. 497 (2020), p. 527.

33) Baby Moose Drawings, Inc. v. Dean Valentine et al., 2011 U.S. Dist. LEXIS 72583 (C.D. Cal. 2011).

34) 김경숙, 앞의 글, 34-35면.

35) 17 U.S.C. § 109(a)

36) 568 U.S. 519 (2013)

Distributors, Inc. v. L'anza Research International, Inc.,[37]과 같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 변경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CRRA와 같은 주법이 권리소진이론과 충돌된다면, 재판매권자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시장 지배력이 이전되며,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균형과 어긋난다고 보았다.

Close v. Sotherby's Inc. 판결을 통해 추급권과 권리소진이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추급권이 저작물과 저작자의 분리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는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서 CRRA상의 추급권은 간접적인 제한일 뿐이고, 저작자가 저작물을 판매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었던 이익을 줄이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미국 판례는 이를 실제적인 제한이라고 보았다.[38]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역시 Kirtsaeng 과 Lexmark 판례에서는 판매자들이 해외에서 판매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건이었고, 이에 Close 판결에서는 저작자로서 시장을 이용하여 권리소진이론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나아가 CRRA 상의 추급권은 권리소진이론이 실현하고자 하는 분리(alienation)를 제한하기보다는 일종의 세금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9] 실제로 재판매보상금으로 저작권자가 재판매 자체를 제한할 수 없고 이는 오로지 시장가격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정해진다. 오히려,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것이 바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CRRA 상 추급권을 권리소진이론과 상충하지 않는 예외로 평가할 수도 있다.

마. 미국 종결권과의 관계

권리소진 이론이 계약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추급권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법적 권리로 미국 저작권법은 '종결권'(termination right)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제 203조에 의하면 1978년 이후에 이전 또는 이용 허락한 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일정 요

37) 523 U.S. 135 (1997)
38) Lorie M. Graham & Stephen M. McJohn, 앞의 글, 528면.
39) 위의 글, 532면.

건 하에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40] 특히 위 종결권은 포기나 양도가 불가능한 강행규정으로 정하여[41], 저작권 계약에서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작가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국에서도 2015년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종결권 도입이 논의된 바 있는데, 아직 종결권에 관한 미국의 판례가 완전히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목적과 배치되어 신진 작가들의 기회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42]

추급권이 적극적인 보상권을 규정하는 반면, 미국의 종결권은 소극적으로 저작권자 및 유족들이 권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목적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에서도 도입된 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종결권이 우리나라 법제에 섣불리 도입되지 않은 것과 같이, 미국에서 여전히 인정되지 않은 추급권을 도입하기 전에 인접한 권리인 종결권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바. 소결

추급권은 시각 예술가들이 다른 저작권자들과 평등한 경제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발전한 사회보장적 권리로서, 저작권법의 원칙인 권리소진이론의 예외로 파악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으며, 우리나라에 추급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추급권의 의의와 더불어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급권이 권리소진이론의 예외인지, 또는 허용될 수 없는 권리인지에 관하여 미국은 프랑스와 상이한 입장을 보이는바, 아래에 설명할 법적 성격에서 프랑스에서는 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40) 홍승기, “저작권계약 수정요구권 입법론에 대한 반론”, 계간 저작권 제30호 제1권 (2017), 163면

41) 미국 저작권법 제203조(a) 제5항, 제304조(c) 제5항

42)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49집 (2015), 695-703면.

3. 법적 성격

가. 학설

추급권을 저작권의 하위 범주에서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이를 입법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추급권의 인격권적인 성격과 재산권적인 성격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등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있는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추급권을 저작인격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저작자가 이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없으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여 사전에 이를 포기한다는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라고 본다.[43] 이에 따르면 이를 제 3자에게 양도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44] 프랑스가 이러한 견해에서 추급권을 입법하였고, 영국은 추급권을 저작인격권 장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EU재판매권지침도 추급권을 강행규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급권을 강행규정으로 파악하면 미술품 거래 관행상 통상 협상력이 약한 작가가 궁핍 등 압력으로 인해 추급권을 사전에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45] 결국 추급권을 포기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만 상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권리를 일신적속적인 성격을 띠는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급권을 저작재산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는 이를 일종의 재산적 보상청구권으로 보고, 저작권의 양도가 특히 금지되어 있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전부 양도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에게 추급권도 역시 양도되는 것으로 해석한다.[46] 현대에 들어서면서 추급권을 저작인격권의 성격으로 파악하는 시각보다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시각이 늘었다.[47] 현재 프

---

43) 나강, 앞의 글, 106면.
44) 위와 같음.
45) 김원오, 앞의 글, 10면.
46) 나강, 앞의 글, 106면.

랑스는 추급권을 저작인격권으로 보는 견해에서 사전포기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복제권, 공연권과 함께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48] 아래에서 설명할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자 보호를 위해 추급권 양도를 금지하나, 이를 일신전속적 권리로 보지 않아 재산 승계에 관한 일반법령에 따라 상속인 등이 추급권의 혜택을 받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 역시 추급권의 재산권적 속성을 드러낸다.

추급권을 재산권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추급권을 일종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재산권으로 파악하기도 한다.[49] 원저작자를 미술시장의 행위자로서 거대한 경매회사나 구매자들의 악의적인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처음부터 추급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계약행위를 방지하여 원저작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프랑스, 한국 등 대다수 국가와 달리 추급권을 재산권이지만 인격권적 성질과 재산권적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를 제3의 특별한 재산권적 청구권으로 파악한다.[50] 나아가 추급권의 입법연혁이 미술저작자의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사회보장적인 기능을 하는 권리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추급권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되었다는 점과 시각 미술저작자들이 다른 저작자들과 다르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격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넘어 사회 보장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다.[51]

---

47) Ricketson, Sam.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d'Auteur 3 (2015), para. 10. (<http://www. adagp. fr/sites/default/files/sg15-0565_ricketson_studydefinitive_2015-07-06_en. pdf (дата обращения: 28.03. 2017)>참조 2021.2.22. 최종방문)).

48) 프랑스는 저작권법 제2장에서 추급권을 저작재산권(Droits patrimoniaux)으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 저작권법 제2장 제122조의8 제1항 (Article L122-8).

49) Ricketson, Sam., 앞의 글, para. 10.

50)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통권 제48호 (2009), 190면.

51) 박경신, 앞의 글, 239면.

결국, 추급권은 순수히 한 성격만을 가지는 개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이므로,[52] 입법 시에 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저작인격권의 탄생지라고 불리는 프랑스에서는, 법정책이나 입법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려는 영미법계와 달리, 저작인격권을 기본적 인권의 일부로 인정한다.[53][54] 나아가 프랑스에서는 저작인격권을 강행규정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추급권 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따라,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는 추급권의 내용 중 어떤 범위에서는 인격권적 성격을 강조하여 입법할지 고찰이 필요하다.

나. 사후 추급권의 강행규정성

우선, 프랑스 저작권법 제 123조의7 규정[55]에 따르면 저작자가 사망한 후 추급권은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저작자가 유언에 의해 유증을 받을 사람을 지정한 경우, 그 수유자는 추급권의 귀속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위 규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56] 파기법원(Cour de

---

52) Michael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Artists Should Have the Right to a Resale Royalty”, Loyola L.A.Ent.L.J. 509 (1995), p. 509.

53)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인격권에 대한 연혁적 분석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1.), 1면.

54) 위의 글, 109면.

55) Article L123-7
I.-Après le décès de l'auteur, le droit de suite mentionné à l'article L. 122-8 subsiste au profit de ses héritiers et, pour l'usufruit prévu à l'article L. 123-6, de son conjoint, pendant l'année civile en cours et les soixante-dix années suivantes.

56)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 Décision n° 2012-276 QPC du 28 septembre 2012, ECLI : FR : CC : 2012 : 2012.276.QPC (<https://www.conseil-constitutionnel.fr/sites/default/files/as/root/bank_mm/decisions/2012276qpc/2012276qpc.pdf>참조 (2021.2.21. 최종방문)).

Cassation)은 위 신청에서 대상이 된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인정하여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인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프랑스 저작권법이 수유자를 배제하고 상속인에게만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은 프랑스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57]

위 결정에서 헌법평의회는 추급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입법자의 의도를 해석하였다. 입법자는 제122조의8의 추급권 규정을 통해 저작자가 재판매 때에도 이익을 얻고 법정상속자들에게 이익을 귀속시키도록 하여 저작자와 그의 가족에까지 추급권을 적용하도록 하였다고 판시하였다.[58] 특히 추급권이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서 입법한 것은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는 평등원칙에 비추어 저작자 및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한 것으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59] 나아가 추급권을 일반적인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자가 사전에 권리를 포기할 수 없게 입법하였고, 이는 경매회사 등 기타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협상력에서 열위에 있는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다고 판시하였다.[60]

결국, 위 결정을 통해 프랑스에서는 추급권을 규정하고 원저작자 사후 귀속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 파악해 추급권을 누리는 저작권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추급권이 입법될 때에, 추급권의 성격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없다면 향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같이 추급권을 법정 상속인들에게만 귀속시키도록 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본다면, 추급권의 재산권적인 성격을 제한하게 된다. 한편 이러한 규정을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맡기도록 하는 입법한다면 추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더욱 부각하되, 원저

57) 당해 결정 중, “L’article L. 123-7 du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est conforme à la Constitution” 부분

58) Décision n° 2012-276 QPC du 28 septembre 2012, ECLI : FR : CC : 2012 : 2012.276.QPC, para. 6.

59) 나강, 앞의 글, 112면.

60)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12-276 QPC du 28 septembre 2012, Fondation Hans Hartung et Anna Eva Bergman, p. 3.

작자의 보호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 Salvador Dali 사건 (VEGAP v. ADAGP)

위와 같이 추급권을 사후에 법정상속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규정에 관해서 유명한 스페인 작가인 Salvador Dali에 관한 판결을 살펴본다.[61] 판결의 쟁점은 2001/84/EC 지침이 프랑스의 위 강행규정을 배제하여 법정상속자에게만 추급권이 귀속되는지였다. 결론적으로 파리지방법원은 위 지침은 프랑스 국내법은 배제하지 않으며, 프랑스에서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여 얻은 수입은 프랑스의 국내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Salvador Dali는 1989년 1월 23일 5명의 법정상속인을 남기고 스페인에서 사망하였다. Dali는 생전에 스페인 정부를 그의 포괄적 수증자로 지정하여 전 저작권을 양도하였는데, 모든 저작권은 1983년 Dali의 발의로 스페인 법에 준거하여 설립된 Gala-Salvador Dali 재단에 의해 관리되고 있었다.[62] 위 재단은 세계적인 작가 Dali의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작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이용권을 VEGAP(Visual Entidad de Gestión de Artistas Plásticos)에게 위탁하였다.

위 VEGAP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ADAGP(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Graphic and Plastic Arts, Société des auteurs dan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과 자매결연을 맺고 ADAGP는 프랑스에서 작가의 작품을 통해 얻은 수익을 VEGAP를 거쳐 재단에 지급해왔으

---

61) Fundación Gala-Salvador Dalí and Visual Entidad de Gestión de Artistas Plásticos (VEGAP) v Société des auteurs dan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 (ADAGP) and Others., (C-518/08), [2010], E.C.D.R. 13 (15 April 2010), ECLI:EU:C:2010:191

62) 한국저작권위원회, “Salvador Dali 사건(추급권)에 대한 유럽 재판소의 EU 지침 해석과 파리 지방법원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15호 (2010. 8.),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8649>참조, 2021.2.20. 최종방문), 1면.

나, 추급권은 재단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프랑스의 저작권법 제123조의7에 따라 작가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해 재단과 VEGAP는 작가의 유언과 스페인법에 근거하여 작가의 작품을 경매하여 얻은 경제적 수익 역시 재단에 귀속될 것이지, 프랑스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며 파리 지방법원에 제소하였다.

프랑스 지방법원은 작가가 유언으로 지정한 수증자인 스페인 정부를 배제하고 프랑스법에 따라 미술가의 법정상속인에게 추급권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EU 지침에 저촉되는지, 유럽연합의 재판소에 그 유권해석을 구하였다. 문제된 EU 지침의 제 6조 1항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재판매보상금 청구권의 인적 범위는 각 회원국 법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63] 유럽 재판소는 추급권과 계산기초 등 사항과 달리, 추급권에 관한 각 회원국의 국내법은 유럽 전범위에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스페인법은 프랑스 법정에서 원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근거로 EU 지침 제 6조 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지침의 전문을 살펴서 우선 추급권은 양도와 사전포기가 불가능한 점,[64] 그리고 유럽공동체조약 제 95조에 따라 각 회원국의 국내법상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였다.

결국 유럽재판소는 EU 지침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저작자의 사후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은 각국의 임의에 따라서 그 청구권자의 범위를 달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에 따라 프랑스 지방법원은 피고 ADAGP가 프랑스 내에서 발생한 수익을 프랑스법에 따라 작가의 법정

---

63) Article 6
Persons entitled to receive royalties
1. The royalty provided for under Article 1 shall be payable to the author of the work and, subject to Article 8(2), after his death to those entitled under him/her.
2. Member States may provide for compulsory or optional collective management of the royalty provided for under Article 1.

64) VEGAP v. ADAGP 판결, para. 28.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 수익을 원고인 재단에게 지급하였더라도 수익 중 재판매보상금만은 작가의 유언과 무관하게 프랑스 법에 따라 법정상속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라. 소결론

위 프랑스 헌법평의회 결정과 작가 Dali를 둘러싼 판결을 통해 다음을 알 수 있다. 첫째, 프랑스법의 저작자 사후 추급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고, 이는 미술저작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따라 입법되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둘째, 작가 Dali의 사후에 프랑스 내에서 추급권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Dali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스페인 법상 설립된 재단에 귀속되지 않고, 위 프랑스법에 따라 오로지 Dali의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국내에 추급권 조항이 입법될 때에 추급권의 법적 성격과 이에 파생되는 사후추급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문제가 될 것이다. 프랑스와 같이 저작자 사후추급권의 귀속을 법정상속인에 한정한다면, Dali 사안에서와같이 저작자가 유언으로 이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귀속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상속인만이 재판매보상금을 얻게 된다. 추급권을 통해 원저작자와 그 가족에게만 상속을 인정하는 프랑스와 달리 유언으로 정한 자도 추급권의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가 입법 시에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4. 경제학적 성격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의 경제적인 기초에 비추어 보아, 추급권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간략히 소개한다. 본래 추급권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추급권이 경제학적으로 시장의 축소 및 왜곡을 가져오며, 실질적으로 저작자들에게도 불리하다는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우선, 추급권은 작가들에게 일종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컬렉터들을 비롯한 매수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65] 그러나 이는 추급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같은 작품에 관한 매매에 대하여는 일견 타당하나, 전체적인 시장이 확장하는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추급권이 각국에서 상호주의에 맞춰 운용되고 미술시장 및 추급권의 적용 대상의 확대에 따라 전제하는 바와 달리 수요곡선이 우상향할 때에는 매수인들 역시 저작권자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나아가, 시장 전체를 조망할 때 추급권은 한 작가의 초기 작품이 후기 작품과 보완재(complementary goods)의 관계에 있어 작가들의 창작 욕구를 고취할 수 있다.[66] 이는 저작권을 인정한 저작권법의 본래 목적과도 부합하고 사회 보장적인 추급권의 성격에 비추어 정합적인 경제적 성격이다. 같은 논지에서 WIPO가 발표한 보고서[67]에 따르면 추급권은 경제학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가정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위의 논의 외에도 추급권의 경제학적 성격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추급권의 도입은 우려와 달리 미술시장의 성장 및 원저작자에 대한 역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 앞으로 도입 국가가 증가하고 관련 연구가 활발해진 후에도 위 결론을 견지할 수 있을지는 향후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65) Stanford, J. D. "Economic Analysis Of The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Australian Economic Papers 42.4 (2003), pp. 395-396.

66) Solow, John L., "An Economic Analysis of the 'Droit de Suit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2 (1998). p. 211.

67) WIPO(주 2), 앞의 보고서

제 2절 베른 협약 및 국내입법

1. 체결연혁

EU에서 통일된 추급권 규정이 마련되기 전부터 국제적으로 저작물 보호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시초는 1886년 9월 9일 체결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다. 프랑스에 추급권이 입법된 이후에 프랑스에서 기원한 추급권이 국제조약 내에 입법되기에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는 특히 추급권을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그 도입 필요성을 아직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선 1928년 로마에서 열린 베른협약 개정 회의에서 프랑스 정부가 아래와 같이 추급권을 추가하자고 제안하였다.

'It is desirable that the inalienable droit de suite, established in France by the law of 20 May 1920 and in Belgium by that of 25 June 1921, to the profit of artists, in their original works which are publicly sold, should be the object of similar legislative dispositions in other countries, on condition of reciprocity, in each of them, between their nationals and those of countries which have already adopted this measure.'[68]

상호주의에 따라 국내에 추급권을 도입한 나라들 사이에서만 위 조항이 적용된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위 제안에 대해 벨기에와 체코가 지지했고, 당시 국제연맹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중 하나였던 IIIC(Internatioanl Institute for Intellecutal Cooperation)역시 이를 지지

68) Berne International Office, "Actes de la Conférence réunie à Rome du 7 mai au 2 juin 1928", Berne International Office (1929), p. 103. 밑줄 임의로 추가.
(<https://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documents/prep-docs/1928_june_Rome-fr.pdf>참조 2021.10.26. 최종방문).

하였다.

위 로마 회의 이후 1934년에 벨기에 정부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에 더하여 저작자의 상속인들까지 인적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추급권은 1935년 로마에서 열린 사법통일국제연구소에서 논의되는 다른 권리들과 인접한 권리로서 국제사회의 주요한 논의대상이 되었으며,[69] 국제사법연구소는 추급권과 같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들에 대해서 베른협약의 부속서에 추가하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70] 베른협약의 초안에서 추급권은 개인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권리로 작가와 사후에는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권리로 파악되었고, 각 체결국에 보호 기간, 산정 액수, 지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내입법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후 세계 제2차대전을 겪은 후, 1948년 6월 26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5차 개정 회의에서 핀란드와 노르웨이는 자국의 예술가들에게 추급권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영국은 국내법에 추급권을 도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였고, 독일은 추급권이 저작권 보호와 관계가 없으므로 위 협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반대의견을 표명하였다.[71][72]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제14bis[73] 조항으로 추급권을 규정하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법에 이를 도입한 나라

---

69) Ricketson, Sam., 앞의 글, para. 25.
70) 위와 같음.
71) 김경숙, 앞의 글, 각주 8; Ricketson, Sam., 위의 글, para. 23.
72) Ricketson, Sam., 위의 글, para. 26.
73) (1) The author, or after his death, the persons or institutions authorized by national legislation, shall, in respect of original works of art and original manuscripts of writers and composers, enjoy the inalienable right to an interest in any sale of the work subsequent to the first disposal of the work by the author.
(2)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claimed in a country of the Union only if legislation in the country to which the author belongs so permits, and to the degree permitted by the country where this protection is claimed.
(3) The procedure for collection and the amounts shall be a matter for determination by national legislation.'

들 사이에서만 추급권의 효력이 갖게 되었다. 이후 1971년 7월 24일 파리에서 열린 개정 회의에서 14ter(제14조의3)로 옮겨지어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8월 21일에 베른협약이 발효되었다.

2. 추급권 조항 및 해석

베른협약 제14조의3은 3개의 항으로 추급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74] 제 1항은, '저작자 또는 그의 사망 후에 국내 입법으로 권한을 받은 자연인이나 단체는 원미술저작물 및 작사자와 작곡자의 원고에 관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한 후에 그 저작물의 매매에 있어서의 이익에 대하여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추급권은 최초 판매 이후의 매매를 좇아서 주장할 수 있다. 저작물의 거래는 통상 공개경매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위 조항상 미술저작물과 작사가 및 작곡가의 원고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건축저작물과 응용미술저작물에는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는다.[75] '이전'과 '양도'의 차이에 관해서는,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최초로 '이전'함에는 매매와 기타

---

74) Article 14ter
"Droit de suite" in Works of Art and Manuscripts:
1. Right to an interest in resales; 2. Applicable law; 3. Procedure
(1) The author, or after his death the persons or institutions authorized by national legislation, shall, with respect to original works of art and original manuscripts of writers and composers, enjoy the inalienable right to an interest in any sale of the work subsequent to the first transfer by the author of the work.
(2) The protection provided by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claimed in a country of the Union only if legislation in the country to which the author belongs so permits, and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country where this protection is claimed.
(3) The procedure for collection and the amounts shall be matters for determination by national legislation.

75)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aris Act, 197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78), p. 90.

유언 등으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매매'는 오로지 유상 매매만을 의미한다.[76] 따라서 공공 미술관에 기증된 경우는 '매매'로 파악할 수 없어 추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추급권은 원작품(original)에 한해 인정되며, 미술가의 생계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를 양도할 수 없도록 정해 기타 이유로 추급권을 포기할 수 없게 하였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국내 입법에 따라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인적 범위가 문제 될 것이다. Dali 작가와 그 법정상속인들 및 재단의 분쟁에서 프랑스에서는 추급권을 강행규정으로 파악해 오로지 법정상속인들에게만 추급권이 귀속된다고 보았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추급권의 사후귀속을 강행규정조항으로 입법할지 문제가 된다. 사후추급권이 문화재단이나 재단, 공기관 등에 양도할 수 있다고 입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1항에서는 추급권의 존속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추급권을 규정한 것에 비추어 최소한 저작권자의 사망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추급권을 저작재산권으로 본다면, 7조와 7bis조에 따라 작가 사망 후 50년은 보장된다.[77]

제2항은 '전 항에서 규정한 보호는, 저작자가 속한 국가의 입법으로 그와 같이 허용한 경우에, 그리고 이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각 동맹국에서 주장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베른 협약의 일반 원칙인 내국인대우와 제5조 1항[78]에 대한 소수의 예외

---

76) Ricketson, Sam., 앞의 글, para. 32.

77) Article 7

(1) The term of protection granted by this Convention shall be the life of the author and fifty years after his death.

Article 7bis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Article shall also apply in the case of a work of joint authorship, provided that the terms measured from the death of the author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eath of the last surviving author.

78) Article 5

(1) Authors shall enjoy, in respect of works for which they are protected under this Convention, in countries of the Union other than the country of origin, the rights which their respective laws do now or may hereafter

에 해당하고, 상호주의가 적용된다. 추급권을 인정할지는 체결국의 자유이며, 당해 나라가 입법한 범위 내에서만 보호할 수 있다. 이는 추급권을 작가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전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상호주의로서 예외를 두지 않았더라면 위 조항이 협약에 마련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범위 내에서만' 추급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위 조항은 제1항의 의무가 선택적임을 나타내고, 베른협약 체결국에는 국내입법을 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프랑스 작가가 아직 추급권이 입법되지 않은 한국에 베른협약의 체결국이라는 이유로 추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다른 예시로 영국의 저작권자가 추급권을 위헌으로 판단되기 전 CRRA에 유효했던 캘리포니아에서 주장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CRRA가 적용되므로 만약 판매 가격이 1,000유로 이상이더라도 이전에 작품을 매수할 때 지급한 금액이 1,000유로 초과라면 추급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베른협약은 추급권에 대해 내국인대우 원칙의 예외,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의 복귀를 인정하고 있다.[79] 베른협약상 추급권은 상호주의 원칙을 따라 작가 자국 국내법에 추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추급권을 인정하는 타국에서도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여기서 조항의 해석상 국내에 입법된 추급권 조항이 동조 1항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되는지 문제가 되나, '주장되는 국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이라는 어구 의미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추급권 적용 대상의 범위가 더 작게 규정되었다고 그 범위를 포함하여 규정된 타국에 추급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추급권을 통한 저작권자 보호라는 조약의 취지에 반한다.[80]

제3항은 '징수의 절차와 금액은 국내 입법에 맡겨 결정한다'라고 규정한다. 추급권을 인정하는 조건은 매우 다양한데, 통상 추적하기 쉬운 공

---

grant to their nationals, as well as the rights specially granted by this Convention.

79)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280면.

80) Ricketson, Sam., 앞의 글, para. 39.

개경매나 중개인을 통한 매매를 그 대상으로 하고, 원저작권자가 판매가격의 일정한 이율[81]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같은 일부 국가는 지급된 가격이 이전의 매매가를 상회할 때만 그 차액에 대해 추급권을 인정하기도 한다.[82] 위 조항은 베른 협약의 체결국 간에 추급권을 통한 저작자 보호가 통일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며, EU 지침이 극복하고자 했던 바이다. 국내 입법 과정에서는 EU 지침 및 기타 해외 입법례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입법 방법

가. 베른협약 성립 이후의 국제사회의 노력

베른협약상의 추급권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작가에게 재판매 때에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금액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베른협약은 국내법에 추급권을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데 내국인대우원칙의 예외로 규정할 수 있고, 상호주의에 따른 부가적인 조항이라 회원국 간의 추급권 입법 내용이 매우 다르다.[83] 따라서 추급권의 국제적 통일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는데, 2013년 9월 미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26개 집중관리단체로 구성된 European Visual Artist는 WIPO의 감독 아래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의 보호를 위한 조약마련을 위한 온라인 청원을 시작하기도 하였다.[84]

위와 같은 캠페인의 목적은 베른협약 회원국들이 추급권을 도입하도록 하여 미술시장에서 국내입법을 하지 않은 국가의 국적을 갖는 작가들이 수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함이다. 오늘날에는 제 3세계를 중심으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 보호를 위하여 조약을 마련하자는 요구가

---

81) 통상 5%

82) 이는 추급권의 의미를 상승한 저작물의 가치, 즉 원저작자가 최초 판매한 후에 그 가치 상승에 기여하였음을 전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83) 나강, 앞의 글, 103면.

84) 박경신, 앞의 글, 237면.; (<http://resale-right.org/>참조. 2021.5.5. 최종방문)

WIPO를 통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85] 특히 WIPO의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에서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의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86]를 통해 미술품의 가격이나 판매량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위 보고서는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도입하면 미술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반대의견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나. 베른협약 발효 이후 추급권 도입 논의 과정

베른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96년 8월 21일에 조약 제1349호로 발효되었다. 협약 내 추급권 조항인 14ter에 따라서 국내 입법에 온전히 맡겨진 추급권 도입 논의는 2007년 「한-EU FTA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한-EU FTA는 2011년 5월 4일 비준되고, 2007년 5월 한-EU 통상장관회담을 시작으로 2년간 8차 협상을 통해 협약이 체결되고 2011년 7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중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EU 측이 독창성 있는 예술 저작물로서 회화, 조형예술, 사진 등에 대해 추급권을 인정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한국은 추급권이라는 낯선 제도를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를 유보하였다.

이에 양 당사자는 2010년 한-EU FTA 협약 제10.10조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과 제10.11조 「제한 및 예외」에서 추급권의 국내도입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한다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다.[87]

---

85) 위와 같음.

86) WIPO(주 2), 앞의 보고서

87) 제10.10조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양 당사자는 예술가의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대한 견해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2년 이내에 양 당사자는 대한민국에서 예술가의 예술저작물에 대한 재판매권 도입의 타당성 및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제10.11조 제한 및 예외
양 당사자는 저작물의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저해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특별한 경우에, 제 10.5조부터 제 10.10조까지에 언급된 권리자에게 부여된 권리의 제한 또는 이에 대한 예외를 자신의 법령에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르면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2년이 지난 2013년 이전에는 협의가 집행되어야 했지만, 추급권에 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에 '미술진흥중장기계획'으로 2022년까지 추급권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EU 지침을 준용하여 법제화하고, 집중관리단체에 의해 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단계적으로 2019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2년에 시행할 것이라는 위 정부 방침 중 실행된 것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우리나라 미술시장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미술시장실태조사[88]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미술시장 규모는 연간 414,673백만 원(2019년 기준)이고, 전 세계 미술시장의 거래총액은 $64.1B(74.7조 원)로 추정되며,[89] 거래량은 4,050만 건으로 전년 대비 2% 상승하여 최근 10년 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세계적인 COVID-19에 의한 경기침체 영향을 감안하면, 국내 미술시장은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4.7%가 성장하였고, 세계 미술시장도 전년 대비 11.8% 성장하였다. 특히 미술품의 재판매가 이루어지는 경매시장은 COVID-19의 영향을 받았지만, 2018년까지는 꾸준히 거래규모가 성장세를 보였다.[90] 한국의 미술시장 규모는 베른협약을 체결하여 국내에 추급권 조항을 도입한 82개국 중 10-20위권이다.[91] 이는 반대론자들이 추급권 도입은 한국 미술 시장의 규모와 성숙도에 비추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던 시기를 지났다는 점을 시사한다.

---

88) 문화체육관광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12.), 39면. (<file:///C:/Users/pc/Downloads/ART_ALL_s.pdf> 참조, 2021.10.26. 최종방문)

89) 위의 글, 211면. 2018년보다 5% 하락

90) 2017년(149,282), 2018년(151,147), 2019년(115,820) [단위: 백만원]

91) 이혜민, 앞의 글, 174면.

저작권법은 역사적으로 출판업자에게 쏠려있던 권리를 옮기기 위하여 발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작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귀속시켰다. 이와 달리 꾸준히 성장하는 국내 미술시장에서 대부분의 작품 가격 상승분은 저작자가 아닌 1차 유통, 2차 유통에 관여하는 주요 행위자들이 취하고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유통업체 및 기타 시장 행위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수익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더더욱 추급권을 도입할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추급권 도입뿐만 아니라 미술품 유통 시장 자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미술 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감정, 유통에 관한 정보의 투명화와 더불어, 추급권 도입으로 미술시장 시스템 개선 및 저작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라. 추급권 도입에 대한 반대론

추급권 도입의 필요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논거를 중심으로 살펴 이익형량을 해보도록 한다.

추급권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는 추급권이 전반적인 미술 시장의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추급권을 도입한 나라 내에서는 추급권이 일종의 세금과 같이 작용하여 경매를 통한 미술품 시장이 위축되고 오히려 거래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작가들에게도 해가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WIPO가 발표한 보고서[92]에 따르면 추급권을 도입하면 미술시장이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영국은 EU 지침에 따라 2006년부터 개별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였는데, 다른 시장으로 미술거래가 이탈하여 영국의 미술시장 규모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영국의 미술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등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93] 보고서에 따르면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된 2006년 영국 미술시

92) WIPO(주 2), 앞의 보고서

장 가치는 오히려 238% 증가하였고, 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이 도입되지 않은 미국 시장의 증가율인 141%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94] 오히려 추급권 도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가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보장해 미술 시장 규모를 유지하거나 키울 수 있는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급의무자가 매도인 및 미술시장 전문가, 즉 아트 딜러나 중개인인 경우에 그들이 재판매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작가들에게 돌아갈 작품 거래가가 그만큼 낮아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추급권이 도입되더라도 그 혜택은 2차 시장에서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소수의 유명한 예술가들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는 첫 판매 시에 작품 거래가가 다소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판매되는 시에 지급될 보상금으로서 이를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수의 유명한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약 100만원 정도[95]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작품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므로 제도의 혜택을 받는 저작자와 작품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 국내도입 방법

1) 입법 유형

한-EU FTA 협약 내용에 따라 추급권 도입 및 시행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입법 형식에 관하여 살펴본다.

추급권을 도입한 약 80개국은 이를 저작권법 내에 규정하거나 개별법인 재판매권리법 등, 또는 예외적으로 민법[96]에 추급권을 규율하고 있다.[97] 추급권을 지식재산권 내의 조항으로 입법한 국가로는 프랑스, 독일, 벨기에가 있으며, 기타 개별 법률을 입법한 국가로는 영국, 스페인,

---

93) 위의 보고서, p. 16.
94) WIPO(주 2), 앞의 보고서, pp.28-30
95) 본고 85면 부록 시행령 제L조 참고
96) 러시아
97) 이혜민, 앞의 글, 78면.

호주, 아일랜드가 있다.[98] 이에 따라 I) 기존 저작권법에 추급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ii) 개별법으로 추급권을 입법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내 입법 방법의 선택

추급권을 이미 도입한 82개국의 국가들은 추급권을 대부분 저작권법, 저작권 및 관련권리법,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에 도입하였다.[99] 저작권법 내의 입법을 시도한다면, 제2장 제3절의 저작인격권(제11조 내지 제15조)에 규정할지, 제4절의 저작재산권(제16조 내지 제38조), 제3장 저작인접권에 규정할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저작권법의 신설 조항으로 추급권을 규정한다면, 저작인격권이 아닌 저작재산권 하에 규정하는 것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추급권의 성격 및 취지상 더 정합적일 것이다. 저작재산권 중 저작인격권의 확장으로 보는 프랑스 경우에도, 저작재산권인 복제권(122-1조, 122-3조), 양도권(122-7조)와 함께 추급권(122-8조)을 규정하였고, 독일 역시 저작재산권에 해당하는 복제권(16조), 배포권(17조), 전시권(18조) 등과 함께 추급권(26조)을 배치하였다.

권리 내용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일 본	한 국
복제권	O	O	O	O	O	O
공연권(상연, 상영, 연주)	O	O	O	O	O	O
구술권			O		O	
공중(재생)송신권		O	O		O	O
전시권	O		O		O	O
배포권	O	O	O		O	O
양도권				O	O	
대여권		O			O	O
번역, 번안권		O	O	O	O	O
이차적 저작물 작성(이용)권	O				O	O
추급권			O	O		

[표 1]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권리 내용

100)

98) 국회입법조사처,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81호 (2019. 11. 21.), 15면.

99) 이혜민, 앞의 글, 200면.

다만, 저작권법 내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추급권을 규정하는 경우,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으로 공백을 채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재산권으로서 추급권을 입법하는 경우, 복제권, 공연권 등의 전통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으로 이해되었던 범주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추급권을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규정된 기타 저작재산권과 특별법상 권리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호주, 스페인과 같은 나라에서는 추급권을 특정하여 개별법을 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특별법이 입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나의 법률로 통일적으로 사태를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다.[101] 세계적으로 특정한 정책에 관하여 국민의 관심을 이끌고,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안을 가시화하고 독립된 법률로 규제하는 경향이 있다.[102]

특별법으로 추급권을 규정하는 경우,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대상을 하나의 특별법 안에 일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입법 과정에서 추급권과 이를 둘러싼 미술계의 문제에 관한 의견을 응집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미술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진흥법(가칭)」)의 제정이 논의되면서, 위 미술진흥법 내에 추급권 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미술 분야 전체를 조망하는 미술 분야 관련 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그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저작권법 내에 추급권을 신설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체계 정당성을 살린 입법을 하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

100) 윤희윤,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 (2010), 285면에서 발췌

101) 임지봉,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45집 (2019), 152면.

102) 위와 같음.

에서 제정하려는 미술진흥법은 1) 공공영역에서 미술품 감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2) 이를 전담하는 국립미술진흥원을 설립하고, 3) 미술품재판매보상금청구권(추급권)을 도입하는 등 미술계 전반의 현안을 다루는 법률로, 미술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하는 정책 목적을 반영하는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추급권과 더불어 현행 한국 미술계에서 꼭 재정비해야 하는 미술품 감정제도와, 대체불가토큰(NFT) 미술품의 규율 등 미술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각 분야를 국내 실정에 맞추어 정비하는 통합적인 미술진흥법의 제정은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술품의 재판매가 현재보다 활발하지 않았던 1971년에는 추급권의 대안으로 '계약권'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103] 위 계약서는 미국 시장에서 개념미술품이 활발히 제작되는 시기에, 작품의 설치나 대여, 양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면서, 매매에 관해서 상승분의 15%를 돌려받는 금전적 혜택을 규정한 것이었다. 계약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재판매보상금을 결정하자는 위 제안은 '양도 및 판매에 관한 예술가의 권리'라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일정 퍼센트를 예술가에게 지급하기로 명시하고 구매자가 다음 구매자에게도 이 조항을 강제하는 방식이다.[104]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문제되었고, 실제로 널리 활용되지 않았다. 특히 투자로서의 예술품은 매매가 간단하지 않은데, 재판매를 위해서 위 계약서의 의무를 추가적으로 지는 것은 구매 의욕을 저하하기도 하였다.[105]

위 계약서가 고안될 당시에는 재판매를 추적할만한 시스템도 부족하였으나 현재는 저작자들이 매매를 추적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블록체인 등)이 고안되었는바, 오히려 위 계약권의 의미를 재조망할 필요가 있다.

---

103) 캐슬린 킴, 앞의 글, 110면., Robert Projansky 의 견해

104) Siegelaub, Seth, "The Artist's Reserved Rights Transfer and Sale Agreement." Leonardo (Oxford) 6.4 (1973), p. 349. (<https://doi.org/10.2307/1572857>참조, 2021.10.25. 최종방문)

105) 캐슬린 킴, 앞의 글, 111면.

특히 NFT 미술품의 계약서 내에 작품을 재판매할 때마다 재판매금의 일정한 로열티를 원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설정하는 조항이 거래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실물 작품의 거래에서 아직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추급권의 권리가 NFT 미술품 매도인 매수인 간의 계약으로 실질적으로 계약상 권리로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계약권으로서의 추급권의 의미를 환기해볼 수 있다.

계약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재판매보상금을 계약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탄력적으로 원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재판매보상금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이로울 수도 있다.[106] 반대로, 저작권법이나 기타 개별법에서 인정되는 비율보다 낮게 계약하는 경우를 규율할 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저작권자들이 시장에서 지배력 및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 기준의 추급권이 법에 규정되어야 계약상의 추급권 역시 저작권자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06) 실제로 많은 NFT 미술품 계약 상 재판매보상금 비율은 대다수의 추급권 규정의 요율보다 높은 10%정도이다. 이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한 플랫폼이 존재하기도 하였으나 원저작자들의 권리 고양을 위하여 다양한 운영자들의 의견에 따라 상향조정된 사례도 있다.

제 3 장 추급권 도입 해외 사례

제 1 절 도입 국가

해외 다른 나라들이 추급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1) 추급권 대상, 2) 추급권 적용 기한, 3) 추급권료 추심기관, 4) 정보공개 의무화 여부, 5) 추급권료 수급과 지급 방식, 6)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7) 추급료 비율 산정, 8) 적용 대상 판매방식 9) 처벌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프랑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추급권을 최초로 인정하고 법으로 규정한 나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추급권 대상

프랑스는 그래픽 및 조형미술 작품을 대상으로 추급권의 범위를 정하였다. 특히 매우 세부적으로 단일 저작물이 아닌 조각이나 판화와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참고할 만 하다.[107]

---

107)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3, 이혜민, 앞의 글, 80-81면.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원판(planches)까지 가능,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epreuves d'artiste) 작품까지 가능,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본 허용,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 허용,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본만 허용, f)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점의 복제본

2) 추급권 적용 기한

추급권의 보호기간은 원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장되며, 추급권의 피상속인은 가족에 한한다.

3) 추급권료 추심기관 및 수급과 지급

그래픽아트 및 조형 미술 보호 협회인 ADAGP(Association for the Defence of Graphic and Plastic Arts)에서 매도인에게 징수액을 청구하고 작가에게 배당한다. 특히 미술품 재판매시 매도인은 매매일로부터 3년 동안 정보를 저작자 또는 추급권의 징수 및 배당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데, ADAGP는 판매에 관한 정보를 통보받으며 이 정보로써 저작자에게 추급권료를 배당한다.[108]

4) 정보공개 의무화 여부

재판매가 통지되는 경우, 추심기관은 추급권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109] 청구권자에게는 지불책임을 지는 자에게 정보요청권이 있다.[110]

5)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추급권이 인정되는 최저 판매가는 세금을 제한 750유로이고[111], 추급권 징수금액이 12,500유로를 초과하지 못한다.[112]

6) 추급료 비율 산정

개정 전에는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하였으나, EU 2006년도 지침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판매가가 50,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4%, 50,000유로 초과 200,000유로 이

108) 이윤정, 앞의 글, 150면.
109)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10
110)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11
111)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législative, Article L122-8
112)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6

하인 경우 3%를, 200,000유로 초과 350,000유로 이하인 경우 1%, 350,000유로 초과 500,000유로 이하인 경우 0.5%, 500,000유로 초과인 경우 0.25%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판매보상금을 계산한다.[113]

7) 적용 대상 판매방식

개정 전에는 경매 절차에 의한 판매에만 추급권이 인정되었는데, EU 지침을 수용하면서 추급권 시행령을 발효하여 갤러리에서 재판매되는 경우까지 추급권을 인정하였다.[114] 이는 프랑스의 미술시장의 거래 약 75%가 갤러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규정이었고, 시행령 공표 이전에는 갤러리만 지급하던 미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시행령 공표 이후에는 경매회사들도 지급하도록 하였다.[115] 그러나 판매인이 작가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구매하고 판매 가격이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는 추급권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116]

8) 처벌규정

추급권을 침해하는 경우 미술품 취득자와 법원직 공무원은 당해 작가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다.[117] 그리고 재판매 보상금의 지불 책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를 세 경우[118]로 나누어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보았다.[119]

2. 영국

113)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6
114) 이윤정, 앞의 글, 150면.; 이동기・김솔하, 앞의 글, 64면.
115) Bulletin du CAAP(Comité des Artistes-Auteurs Plasticiens), Droit de suite, L'info Noir/blanc 32, décembre 2004, p. 2 참조, 이동기・김솔하, 앞의 글 64면, 각주 85 재인용.
116)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législative, Article L122-8
117)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législative, L334-1
118) 첫째, R122-9(1)조를 위반하여 해당 저작권자에게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둘째, R122-9(2)조를 위반하여 추심기관에 통지를 소홀히 했을 경우, 셋째, R122-10(1)조를 위반하여 저작권자에게 정보청구권에 대해 소통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119)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12

1) 추급권 대상

영국은 EU지침에 따라 예술가의 추급권 규정(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120]을 제정하였고 4조 1항에 따르면 회화, 콜라주, 소묘, 판화, 조각, 벽걸이 카펫, 도자기, 유리공예품, 사진 등의 회화나 조형미술품에 추급권이 인정된다. 다만 프랑스와 달리 복제물은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허락 하에 한정본으로 제작된 것에 한하여 추급권이 인정된다.[121]

제 5조에서는 공동저작자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동저작물의 경우 추급권은 공동으로 작가에게 귀속되고, 동등하게 또는 합의한 방식대로 분배되고, 위 합의사항은 반드시 계약 각 당사자에 의한, 또는 그를 위해 서명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추급권 적용 기한

추급권의 보호기간은 프랑스와 같이 원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이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거나 재지불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122]

3) 추급권료 추심기관 및 수급과 지급

영국은 추급권 제도의 운영을 위해 정부의 인가를 얻은 관리단체(Collecting Society)가 저작권자의 에이전트로서 재판매보상금을 징수하도록 한다.[123]

영국은 대부분 나라들이 단일한 추심기관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영국디자인미술가저작권단체(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 DACS)와 영국 미술가들의징수단체(Artists' Collecting Society; ACS)가 추급권

---

120)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https://www.legislation.gov.uk/uksi/2006/346/introduction/made>참조 2021.10.27. 최종방문)

121)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4

122)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3(2)

123)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4

을 추심한다. 이는 단일한 중앙 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가장 효율적으로 추급권 지급을 관리할 수 있지만 한 기관이 독점권을 가지는 폐해가 있음을 고려하여 여러 논의 끝에 다중 기관이 관리해 시장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다.[124] 현재 대표적으로 DACS가 추급권의 추심 및 지급을 관리하고 있고, 영국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lump-sum 방식으로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과 달리 매달 보상금을 지급한다. 추급권 소유자는 이 중 하나의 단체를 선택할 수 있다.[125]

4) 정보공개 의무화 여부

추급권자는 재판매 후 3년 이내에 재판매보상금과 관련된 정보[126]를 취득할 권리가 있고,[127]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28]

5)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최저 판매가는 1,000유로이고, 추급권 징수금액이 12,500유로를 초과하지 못한다.[129]

6) 추급료 비율 산정

프랑스와 동일하게 EU 지침을 수용하여 추급료 비율을 정하였다.[130] 구체적으로 판매가가 50,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4%, 50,000유로 초과 200,000유로 이하인 경우 3%를, 200,000유로 초과 350,000유로 이하인 경우 1%, 350,000유로 초과 500,000유로 이하인 경우 0.5%, 500,000유로 초과인 경우 0.25%의 비율을 적용하여 재판매보상금을 계산한다.

---

124) 이혜민, 앞의 글, 107면.
125)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4(3)
126) 재판매보상금의 액수, 지급의무자 등
127)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5(1)
128)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5(4)
129)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2(3)(b), 3(3) Schedule 1
130)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3(3)

7) 적용 대상 판매방식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미술품 판매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매매, 즉 사적인 매매를 제외한 재판매에 적용되고,[131] 판매인이 작가로부터 3년 이내 직접 구매하고 판매 가격이 10,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는 추급권의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8) 처벌규정

영국은 프랑스나 호주 등과 같이 추급권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통지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32]

3. 독일

1) 추급권 대상

독일은 원저작품인 저작물 중 순수미술작품, 그리고 사진저작물에 추급권을 인정하고, 건축저작물이나 응용미술품은 대상에서 제외한다.[133] 이는 건축저작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부동산시장의 요인이 크기 때문이고, 응용예술품은 사용되는 재료의 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134]

2) 추급권 적용 기한

추급권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보호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저작재산권과 같이 사후 70년까지 추급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135]

---

131)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2(3)
132) The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s 15(5)
133) 독일 저작권법 26조 8항
134) 계승균, 앞의 글, 192면.
135) 김원오, 앞의 글, 38면.

3) 추급권료 추심기관 및 수급과 지급

독일은 추급권 징수와 배포에 관해 집중관리체제를 도입하였으며 특히 정보요청권을 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136] 저작권 관리단체로는 '순수미술 및 그래픽아트 저작권 협회'(The society of authors of fine and graphic art: BILD-KUNST)가 있고 위 단체에서 1980년부터 일괄적으로 추급권료를 수령하여 왔고, 각 미술관련 협회들은 저작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지급계약을 맺고 추급권 수령을 해오고 있다.[137] 위 협회가 일 년에 한 번 12월에 배분한다.[138]

4) 정보공개 의무화 여부

저작자는 미술상 혹은 경매인에게 정보를 요구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미술상이나 경매인의 관여 하에 저작자의 어떤 작품이 재판매 되었는지에 대해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139] 나아가 저작자의 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저작자는 미술상 또는 경매인에게 양도인의 성명 및 주소 그리고 양도가액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140] 위 각 정보 청구권은 저작권단체(BILD-KUNST)를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141]

위 청구를 받은 예술품거래상 또는 경매인은 정보를 관련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위 예술품거래상 또는 경매인이 저작자에게 재판매보상금 지

---

136) 이동기・김솔하, 앞의 글, 65면.
137) 계승균, 앞의 글, 183면.
138) 이혜민, 앞의 글, 112면.
139) 독일 저작권법 제 26조 4항
140) 독일 저작권법 제 26조 5항
141) 독일 저작권법 제 26조 6항, 기타 제 7항에 의한 정보 청구권은 계승균(2009)의 논문 185면 참고.
독일 저작권법 제 26조 제 7항
제4항 및 제5항상의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에 관한 의문에 이유가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단체는 보고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나 자신이 정한 회계검사인 혹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 정보의 정확성 혹은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영업장부 혹은 기타 문서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것으로 입증되면, 보고의무자는 위 검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분을 지급하였다면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142]

5)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1965년 저작권법이 전면 개정될 때에는 500마르크 이상의 미술품에 대해 추급권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규정은 유럽지침을 수용해 400유로 이상의 판매가에만 추급권이 인정된다.[143]

6) 추급료 비율 산정

독일 역시 예전에는 판매가액의 5%의 보상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프랑스와 같이 유럽지침을 수용하여 현재는 판매가가 50,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4%, 50,000유로 초과 200,000유로 이하인 경우 3%를, 200,000유로 초과 350,000유로 이하인 경우 1%, 350,000유로 초과 500,000유로 이하인 경우 0.5%, 500,000유로 초과인 경우 0.25%의 비율을 적용한다.

7) 적용 대상 판매방식

순수한 사적 양도가 아닌 거래를 통한 양도에만 추급권이 인정되며, 구체적으로 예술품 거래상이나 경매인이 취득자, 양도인, 중개인으로 참여한 양도를 의미한다.[144]

8) 처벌규정

독일은 프랑스나 호주 등과 같이 추급권 미납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통지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다.

4. 시사점

142) 독일 저작권법 제 26조 4항
143) 독일 저작권법 제 26조 4문
144) 계승균, 앞의 글, 193면.

프랑스, 영국, 독일의 추급권 규정을 통해 적용대상의 범위와 추급권의 보호 기간, 그리고 추심기관의 형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가. 적용대상

첫째, 추급권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적용 대상에 관하여 유럽 지침에 따라 널리 받아들여지는 유럽지침과 베른협약은 다소 차이가 있다.[145] EU 지침 전문 제 19항은 시각조형미술이 아닌 문예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원고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반면, 베른협약 제14조의3 제1항은 문학 작가나 작곡가의 원본 원고를 추급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적용대상을 정함에 있어 프랑스의 세부 조항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는 시각미술품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복제가 가능한 판화, 조각,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에나멜, 사진 작품, 음악이나 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량까지 시행령으로 정하여 규정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하였다.

현재 추급권은 미술진흥법을 제정하여 미술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베른협약의 전문과는 달리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EU 지침의 방향에 부합하도록 문예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원고는 제외하는 것이 정합적일 것이다. 나아가, 미술진흥법이라는 개별법 내에서 추급권 대상을 규정할 수 있는 만큼, 프랑스의 입법과 같이 복제 가능한 시각예술품에 대해서도 그 복제 가능 개수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 적용기간

보호기간에 관하여 베른협약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145) 이동기 • 김솔하, 앞의 글, 56면.

추급권을 저작재산권으로 본다면 사후 50년까지 권리가 보호될 것이다. 이에 반해 유럽 지침을 수용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을 참고하였을 때 사후 70년까지도 추급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46]

다. 추급권료 추심기관 및 수급과 지급

재판매보상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이미 추급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1) 재판매의 통지, 2) 재판매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요청, 3) 관련 고지서 송부, 4) 재판매보상금 청구의 과정을 거친다. 추심 기관이 보상금을 수령하면 이를 작가에게 분배하기 위해 저작자 본인 또는 상속인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다중 단체로 추급권료에 관한 행정을 맡도록 할 수 있으나, 영국에서도 논의되고 대다수의 나라들과 같이 집중된 관리기관을 두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재판매 된 때에 지급의무자인 매도인 등이 관리기관에 통지를 하고, 관리기관이 재판매보상금을 추심한 후에 각 저작자에게 매달 혹은 일 년에 한 번 배당하는 일반적인 절차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처벌규정 유무

재판매보상금 미납에 관하여 저작권법 시행령 및 개별법에서 처벌조항을 둘 수 있다. 프랑스처럼 일정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판매자와 관련 공무원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매도인측의 정보 공개의무에 관한 법원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이며,[147]

146)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추급권이 적용되는 기간은 작가의 사후 50년, 60년, 70년, 및 그 이상으로 매우 다양하나 약 80개국 중 56개국이 사후 70년으로 한다.

147) 추급권을 도입한 약 80여개국 나라 중 추급권료 미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는 나라는 총 19개국, 추급권 관련 통지 및 고지 의무,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국가는 총 13개국이 있고, 양자를

사회보장적 재산권으로서 추급권을 인정하면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실익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는 추급권을 관리하는 관리단체를 통해 추급권을 수령하므로, 일원화된 방법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관리단체를 통해서 추급권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에 직접 매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두 마련한 국가는 불가리아, 프랑스, 세르비아 3국만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민(2017)의 글 114면 참고.

제 2 절 도입 논의 국가

1. 미국

가. 캘리포니아 주 추급권법

추급권의 의의를 살펴보며 권리소진이론의 예외로서 추급권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미국의 중요한 두 판례[148]를 통해 살펴본 바 있다. 거대한 미술 시장이 자리한 미국에서도 추급권의 법제화는 1973년 Close v. Sotheby's, Inc. 사건을 발단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에 있었던 소더비 경매에서는 라우센버그의 두 작품이 $85,000과 $90,000에 낙찰되었는데, 위 두 작품을 경매에 출품한 유명 콜렉터는 각 작품을 각각 $900, $2,500에 구입하였을 뿐이었다. 이에 위 경매에 참여한 다른 작가들[149]과 함께 라우센버그는 추급권 도입 캠페인에 앞장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1976년에 캘리포니아재판매법(California Resale Royalty Act; CRRA)이 제정되어 1978년 1월 1일에 시행되었다.[150]

위 법에 의해 규정된 추급권의 내용[151] 은 현재 추급권을 도입한 나라들과는 그 적용 대상과 비율이 사뭇 다르다. 특히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

---

148) Morseburg v. Balyon과 Close v. Sotheby's, Inc., 본고 8면 참고
149) 앤디 워홀, 제스퍼 존스, 사이 톰블리 등
150) 김경숙, 앞의 글, 32면.
151) California Civil Code, § 986.
(1) 추급권의 주체가 되는 예술가는 순수미술제작자로서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재판매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2년간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2) 판매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판매행위가 캘리포니아 주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경매에 의한 판매 또는 딜러를 통한 거래로서, 판매자(또는 에이전트)가 캘리포니아 거주자이거나 거래가 주내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상으로 된다.
(3) 판매되는 미술작품은 "순수미술(fine art)"이어야 한다;
(4) 저작물은 이윤을 목적으로 판매되었거나 양도된 것이어야 한다.
(5) 판매 금액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후 20년간으로 현재 사후 50년에서 70년을 보호하는 것에 비해 매우 짧으며, 판매금액의 5%를 일률적으로 추급권료로 정하였다.[152]

그러나 앞서[153] 살펴본 바와 같이 Close v. Sotheby's Inc.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법이 캘리포니아 주 밖의 미술작품 판매를 규제하여 헌법에서 정한 "주 간 상거래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미 주 간의 통상조항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연방법 도입 시도

위와 같이 주법으로 추급권을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연방법으로 입법하는 시도가 논의되었다. 하원의원 Waxman이 1978년에 시각예술가들을 위한 유보 권리 법(Visual Artists/ Residual Rights Act of 1978; Waxman 법안)을 제안하였고, Kennedy는 1986년 제안한 법안에서 작품이 판매될 때마다 추급권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154] 위 법안은 개정되어 1990년 시각예술가법(Visual Artists Right Act of 1990; VARA)로 통과되었고, 제608조(b)는 예술가들의 재판매보상금청구권에 관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저작권청이 연구를 수행할 의무를 규정하였다.[155]

그러나 위 의무조항에 따라 미국 저작권청이 발표한 1992년 연구 보고서[156]에서는 추급권 도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EU 국가들의 추급권 도입 여부에 따라 다시 고려할 것을 시사하기도 하였다.[157] 이후 EU 국가들이 대거 추급권을 국내법에 규정하는 상황에 맞추어 미국 저작권청은 20년간 유지했던 반대 기조를 뒤바꿔 2013년도 보고서를 통해

152) 김경숙, 앞의 글, 33면.
153) 본고 9-11면 참고
154) 김경숙, 앞의 글, 39면.
155) VARA § 608(b).
156)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1992. 12. 1.).
157) 이혜민, 앞의 글, 137면.

추급권 도입을 의회에 권고하는 입장을 보였다.[158]

보고서의 견해는 구체적으로 미국 저작권법의 권리소진이론이 작가들의 창작 인센티브와 공익의 균형을 이루는 기초이므로 추급권이 위 이론과 어떻게 조화되는지가 문제된다고 보았다.[159] 나아가 추급권을 연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창작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논지에서, 그 적용대상과 요율 등의 고려사항을 제시하며 추급권 도입이 미술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2015년 4월 16일에는 추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미국 상원과 하원에 공동으로 발의되었으나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하였고, 2018년에도 'American Royalties Too (ART) Act'라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다.[160] 2015년과 2018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매보상금은 양도 또는 포기할 수 없는 성격의 권리이며, (2) 보상금이 적용되는 매매는 1백만 달러 이상인 경매회사의 모든 경매와 더불어 온라인 경매를 포함한다. (3) 보상금의 범위는 재판매 가격이 5천 달러 이상인 경우 판매가격의 최대 5% 또는 $35,00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4) 경매 회사는 경매 후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5) 제재수단으로는 보상금 미지급시 저작권 침해로 보아 제소하여 미국 저작권법 저작권법 504조(c)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작가들은 보상금 관리단체를 통해 1년에 최소 4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7) 미국 저작권청에게는 관리단체를 규제하는 규칙을 마련하도록 정하였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입법 노력은 추급권 도입에 관한 찬반 대립을 넘어 구체적

---

158)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Docket No. 2012 - 10], Federal Register. Vol. 77, No. 182, Wednesday, September 19, 2012, Notices

159) 위의 글, 58177면.

160) American Royalties Too Act of 2015, American Royalties Too Act of 2018

으로 어떻게 이를 실현할지까지 논의가 진전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베른 협약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 미국 작가들의 작품이 거래되어도 미국 작가들이 재판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추급권 도입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세계 미술시장 규모는 2018년에는 약 674억 달러로, 그 중 약 291억 달러가 경매회사를 통해 거래되었고, 미국은 미술시장 중 44%을 점유하고 있다.[161] 이를 감안하였을 때에 추급권 도입을 통해 작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은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2. 중국

가. 중국 내 추급권 도입 찬반 의견

2019년 기준 중국의 미술시장은 미국(44%), 영국(21%)을 이어 세 번째(19%)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현재까지 추급권이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시장이다.[162][163], 세계 미술시장에서 중국의 추급권 도입은 미국과 더불어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추급권은 2010년에 이르러서 논의되었는데, 중국의 미술가협회 회장이었던 吳作人은 1990년 9월 중국 저작권법이 입법될 당시 간담회에서 “추급권이 없어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렸었다.[164] 이후 중국에서 추급권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

161) “Press Release: The Art Basel and UBS Global Art Market Report 2019”, Art Basel (2019. 3. 8.), (<https://www.artbasel.com/news/art-market-report>참조 2021.8.22. 최종방문)

162) 위와 같음.

163) 실제로 2017년도에는 중국의 미술품 경매시장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기도 하였음. Yi Shan Tang & Qian Qian GAO, “The Artist’s Resale Right Dispute: A Case Study of China, EU and US”, EU연구 통권 제51호 (2019), p. 88.

164) 이혜민, 앞의 글, 148면.

중 추급권 조항 역시 반영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추급권이 논의된 배경에는 추급권을 보호하고 있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진행되는 경매에서 유수의 중국 작가들의 작품들이 판매되어도 중국 작가가 어떠한 보상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추급권의 도입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추급권을 인정하는 경향이므로 중국도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특히 현재 미술시장의 중국 작가들의 기여분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65]

이와 달리 반대론자들은 경매에 한하여 추급권을 도입하는 경우에 기타 다른 재판매방식과 공정하지 못하다는 논거와 함께, 현재 중국에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미술가들은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지 않고, 시장을 위축시켜 적절한 가격형성을 왜곡해 오히려 작가의 이익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한다. 나아가, 작품의 가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작가가 아닌 유통과정에서 미술품 판매 대리인, 화랑, 큐레이터 등의 관계자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는 근거 또한 주장된다.[166]

중국 특수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추급권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평가 또한 타당하다. 현재 중국 미술품 거래의 90% 이상이 정품이 아니라는 추정 결과가 있을 정도로 위작 미술품 및 이를 통제하기 위한 감정평가제도 등이 구축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추급권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은 합리적인 주장이다.

나. 중국 저작권법에 추급권 조항 입법 시도

중국은 2001년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2010년에 제2차, 2011년 제3차로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그 중 첫 번째 개정안에서는 제 11조로, 제2차 개정안에서 제 12조로 추급권이 제안되었고[167], 다만 개정안의 내용

---

16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의 추급권 도입 논의와 시사점”, 문화예술지식 DB 문화돋보기 제25호 (2016. 7.), 7면.

166) 위의 글, 8면.

167) David S. W. Ma, “Right to Integrity and the Proposed Resale Royalty

에 이르기까지의 회의록이나 공식 자료가 공개되어있지는 않다.[168] 위 개정안에 대하여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추급권을 도입한 것은 급증하는 중국 미술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추급권을 제 12조에 단일한 조항으로 규정하며 일종의 보상금(獲酬權)의 개념으로 기타 개인적, 경제적 권리와 구별하였다. 나아가 국가판권국은 주석에서 세계 다른 입법례에 비추어 추급권을 경매로 거래된 작품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169]

국가판권국의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조항은 적용 대상 및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보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기로 정하고 있다.[170] 저작권법 내에서 추급권의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행정법규인 국무원 규정으로 입법하길 예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개정안을 고안할 당시 아직은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의 추급권 도입 논의는 여전히 찬반이 양립하고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제4차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제 14조에 추급권 조항이 제안된 바 있다.[171] 이는 특히 2014년 1월 15일 추급권 관련 단체인

Right and Notification Right in the PRC Copyright Law", 49 Stan. J. INT'l L. 477 (2013), p. 478.;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다.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修改草案第二稿)
(國家版權局 2012 年 7 月)
第十二條
美術、攝影作品的原件或者文字、音樂作品的手稿首次轉讓后，作者或者其繼承人、受遺贈人對原件或者手稿的所有人通過拍賣方式轉售該原件或者手稿享有分享收益的權利，該權利不得轉讓或者放弃，其保護辦法由國務院另行規定。
外國人、无國籍人其所屬國或者經常居住地國承認中國作者享有同等權利的，享有前款規定的權利。

168) 위의 글, p. 480.

169) 國家版權局, "關于《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修改草案第二稿) 修改和完善的簡要說明", (2012. 7.), (<http://www.gov.cn/gzdt/2012-07/10/content_2180033.htm>참조, 2021.10.25. 최종방문)

170) 위의 글 중 "其保護辦法由國務院另行規定。" 부분

171) 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修訂草案送審稿)
第十四條 美術、攝影作品的原件或者文字、音樂作品的手稿首次轉讓后，作者或者其繼承人、受遺贈人對原件或者手稿的所有人通過拍賣方式轉售該原件或者

CISAC(Con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Sociétés d'Auteurs et Compositeurs)[172]가 중국의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해 베이징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입법 로비 활동을 위해 힘쓴 결과이기도 하다.[173] 그러나 결과적으로 2021년 6월에 시행되는 최종적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는 추급권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

3. 시사점

중국에서는 추급권을 도입하여 시행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논의된 미국과 달리, 도입 여부에 자체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미술품 시장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이 선결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중앙 관리단체가 추급권을 징수하고 분배하기 위해서는 기초자료인 미술작품의 재판매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역시 감정제도 등이 더욱 보완되어야 하며, 미술품 등록제도 등 미술품 유통과 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선결문제, 혹은 최소한 추급권 입법 및 시행과 동시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중국에서 2011년부터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추급권 조항에 관한 공식적인 논의 결과가 공개된 자료로 존재하지 않아 논의의 진척 여부를 알기 어렵다.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집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과정이 회의록 등으로 공개되면,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주법 제정이 연방법에 선취된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관한 판례[174]로 주법으로는 추급권을 입법하기 어려워졌다. 따라서 연방법으

手稿所獲得的增値部分，享有分享收益的權利，該權利專屬于作者或者其繼承人、受遺贈人。其保護辦法由國務院另行規定。

172) The 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Societies of Authors and Composers

173) 이혜민, 앞의 글, 151면.

174) 캘리포니아주의 추급권을 규정한 법률 CRRA가 위헌이라는 Close v. Sotheby's, Inc. , 894 F.3d 1061 (9th Cir. 2018), 본고 8-10면 참고

로 저작권법을 개정해 추급권 조항을 도입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며, 미국 역시 베른 협약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만큼 미국 작가들의 권익을 위해서 조항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주목할 점은, 추급권의 발상지인 프랑스와 달리 미국에서 논의되는 추급권은 낭만적인 굶주린 작가들에게 사회 보장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에서 작가들이 작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한 기여분의 일부를 추급하려 권리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추급권을 사회 보장적인 권리가 아닌, 작가들의 본래의 정당한 경제적인 권리로 보아 추급권 도입에 타당성을 부여한다.

제 4 장 추급권 조항의 실효성 제고

제 1 절 지급의무자

추급권이 도입된다면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점은 바로 누가 추급권을 지급하느냐이다.[175] 이에 관해서 관련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 후에, EU 지침에 따라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해석할지, 이를 당사자 합의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과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국내입법 시 이를 고려할 때에 대두될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해 및 우리나라 저작권법과 조화로운 해석을 도출하도록 한다.

1. 지급의무자 규정에 관한 해외 입법례

가. EU 지침 및 규정

2001년 EU 지침 1조 4항[176]에서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177] 전문 25항에 따르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어야 하나, 회원국들은 이 지급책임에 관한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매도인이란 판매를

---

175) 박경신, 앞의 글, 223면.

176)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resale right for the benefit of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177) Article 1

Subject matter of the resale right

4. The royalty shall be payable by the seller.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one of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2. The right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apply to all acts of resale involving as sellers, buyers or intermediaries art market professionals, such as salesrooms, art galleries and, in general, any dealers in works of art.) other than the seller shall alone be liable or shall share liability with the seller for payment of the royalty

결정하는 자 또는 그를 대신해 판매를 결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2001년 지침 중 예술가의 추급권 실행을 위하여 규정된 2006년 EU 규칙[178]은 제7조 1항에서 매매 완료 시에 매도인은 매매에 따른 재판매 보상금청구권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179]. 위 지침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지만, 각 회원국에 재량을 부여한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지식재산권법에서 제122조의8 제3문에서 매도인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지급 책임은 매매에 관여한 미술시장 전문가가 지고, 만약 두 전문가 간에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180]

위 법률 시행령 제122조의9[181]에서는 구체적으로 (I) 공개 경매의 경

---

178) European Communities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179) Liability to pay resale royalty.

7.(1) On completion of the sale, the seller is liable to pay the resale royalty due in respect of the sale.

(2) However, the seller under paragraph (1) may withhold payment until sufficient evidence of entitlement to be paid the resale royalty is produced.

(3) Any liability to pay resale royalty in respect of resale right belonging to more than one person as joint authors is discharged by a payment of the total amount of the royalty to one of those persons.

180) 프랑스: Article L122-8(3)

Le droit de suite est à la charge du vendeur. La responsabilité de son paiement incombe au professionnel intervenant dans la vente et, si la cession s'opère entre deux professionnels, au vendeur.

181) R122-9

Article R122-9

I. - En cas de vente d'une oeuvre originale graphique ou plastique aux enchères publiques, le professionnel du marché de l'art responsable du paiement du droit de suite est, selon le cas, la société de ventes volontaires ou le commissaire-priseur judiciaire.

II. - Dans les autres cas, le professionnel du marché de l'art intervenant dans la vente est responsable du paiement du droit de suite. Si la vente fait intervenir plusieurs professionnels, le professionnel responsable du paiement du droit de suite est :

1° Le vendeur, s'il agit dans le cadre de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

우는 임의 경매회사 또는 법정 경매인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고, (II) 공개 경매 외의 경우에는 매매에 관여한 미술시장 전문가가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182] 만약 매매에 복수의 전문가가 관여한 경우라면, (1) 매도인의 전문적인 활동 범위 내에서 매매가 일어난 경우는 매도인이, (2) 그 외의 경우에는 중개인으로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전문가가, (3) 상술한 경우들을 제외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매수인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183]

기본적으로 위 법률과 시행령은 매도인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되, 이를 미술시장 전문가 등이 지불해야 하고, 양 전문가 사이에서는 매도인이 이를 지불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시행규칙은 공개경매이든 아니든 관여한 전문가에게 지급책임을 돌리고, (II)(3)의 경우에만 매수인이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다. 영국

영국은 2006년 추급권 규칙[184] 제 13조 1항에서 매도인과, 매도인의 대리인, 그가 없다면 매수인의 대리인, 또는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매수인이 우리나라 민법상 부진정 연대채무(jointly and severally liable)를 진다고 규정한다.[185]

매도인과 관계자는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공동으로 지면서 동시에 각각 개별적으로도 진다. 관계자란, 매도인의 대리인, 매도인의 대

2° A défaut, le professionnel du marché de l'art qui reçoit, en tant qu'intermédiaire, le paiement de l'acheteur ;

3° A défaut, l'acheteur, s'il agit dans le cadre de son activité professionnelle.

182) 박경신, 앞의 글, 245면.

183) 위와 같음.

184)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185) 윤성근, "2015년- 2016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6), 309면 참고.

"'joint and several liability'는 당사자간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서 양자가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으로 미술품 거래와 관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186]

라. 벨기에

벨기에는 경제법에서 추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개경매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매매에 관여한 미술시장 전문가, 공무원, 그리고 매도인이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책임을 공동으로, 또 개별적으로 진다.[187] 경매가 아닌 재판매의 경우 공개경매의 경우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자들이 공동으로, 또 개별적으로 진다.

마. 독일

독일은 1965년 저작권법 제26조에서 처음으로 추급권(Folgerecht) 조항을 규정하였고, EU 지침을 수용하면서 다시 개정된 조항은 2006년 11월 16에 발효되었다.[188] 특히 제26조 1항은 양도인이 저작자에게 일정 지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이 사인이라면 양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관여한 자가 양도인과 함께 연대채무의 책임을 지지만, 여전히 내부 관계에서는 양도인만이 홀로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다.

바. 호주

호주는 추급권 도입에 따른 논의를 거쳐 2010년 6월부터 개별법으로 추급권 제도를 시행하였다.[189] 호주에서는 독일과 프랑스처럼 미술시장

---

186) 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regulation 13(1), (2); 박경신, 앞의 글, 246면.

187) Code de droit economique Art. XI.178 §1er
Pour les reventes effectuées dans le cadre d'une vente aux enchères publiques, les professionnels du marché de l'art intervenant dans la revente à titre de vendeurs, d'acheteurs ou d'intermédiaires, l'officier public et le vendeur sont solidairement tenus de notifier la vente dans le mois de celle-ci à la plateforme unique. Ils sont également solidairement tenus de payer via la plateforme unique les droits dus dans un délai de deux mois suivant la notification.

188) 김원오, 앞의 글, 38면.

189)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의 규모가 크지 않지만, 자국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였고 시행 1년간 그 영향도 긍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190]

지급의무자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1인 이상이면 매도인 전원이, 미술시장 전문가로서 매도인의 대리인, 그러한 대리인이 없다면 미술시장 전문가로서 매수인의 대리인, 양 당사자 모두 대리인이 없다면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1인 이상이면 매수인 전원이 재판매보상금 지급할 책임을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진다.[191]

사. 소결

각국의 입법은 기본적으로 매도인을 원칙적인 지급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되, 매도인을 대리한 미술시장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 측 먼저 그 지급책임을 지고, 매도인 측의 미술시장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 매수인 측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급의무자에 관한 판결

지급의무자 규정에 대해 2009년에 시작된 프랑스 국립골동품조합(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 이하 "SNA"라고 합니다)와 Christie's France 사이에 발생한 추급권에 따른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사건을 살핀다.

가. 사실관계

Christie's France는 예술품 경매회사로, 경매약관에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추급권에 따른 지급의무자를, 즉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SNA는 재판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도인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프랑스 지식재산법 제122조의8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190) 한국저작권위원회, "시행 1년을 맞은 호주 추급권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16호 (2011. 8.), 1-2면.
191) 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Act 2009 section 20

하여 (i) 크리스티 프랑스가 부정 경쟁행위이며, (ii) 크리스티 프랑스의 해당 약관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를 파리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192]

나. 쟁점

먼저 부정경쟁행위인가에 대하여, 원고 SNA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크리스티 프랑스와 원고는 모두 2차 시장에서 예술품을 판매하는데, 매수인에게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을 야기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규정된 바와 달리 매수인이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피고의 약관 규정이 EU 지침에 따라 규정된 지식재산권법 해당 조항에 위배되는지 문제되었다. 특히, 원고는 해당 조항은 저작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장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상대적 무효가 될 것이 아니라, 절대적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판단

파리 지방법원은 2011년 크리스티 프랑스 약관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권리자인 저작권자와 그 상속인들만이 약관 규정의 무효를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SNA는 무효를 구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약관 규정의 무효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를 분배하는 피고의 약관 규정이 그 자체로 부정경쟁을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잠재적인 매도인이 재판매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원보다 피고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같은 논리로 잠재적인 매수인은 피고보다 원고를 더욱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192) TGI Paris, 3e ch. 2e sect., 20 mai 2011, n° 09/10883. (<https://www.doctrine.fr/d/TGI/Paris/2011/FR7EF880E2530477FC449F>참조 2021.8.22. 최종방문)

라. 소송경과

그러나 파리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 매도인에게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것은 공공정책에 근거한 것으로 위 보상금 수령을 보호하고 미술 시장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의 해당 약관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지방법원과 달리, 파리 항소법원은 원고가 해당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이를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이 공공 시장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이기에, 원고 역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지급의무자가 매도인이라는 EU 지침을, 회원국들이 지침과 달리 지급의무를 매수인에게 전가할 수 없는 성격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EU 지침과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의 목적은 저작권자들의 보호에 한정되지 않고, 미술 시장 경제의 적절한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법은 명시적으로 추급권의 지급을 매도인이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떠한 합의로 면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3]

그러나, 2013년 항소심법원의 판단은 이와 정반대였다. 원저작자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재판매보상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급에 관한 사항의 예외를 둘 가능성이 있고, 지식재산권법 제 122조의8 제1항은 의무이지만, 매도인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제3항은 공공 정책적인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94]

이에 피고 Christie's France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EU 지침 제1조 제4항 원칙의 해석에 대해 유럽 사법재판소에 선결적인 심판을 요청하였다.

마.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195]

193) CA Paris, pôle 5, ch. 4, 12 déc. 2012
194) CA Paris, pôle 5, ch. 4, 3 juillet. 2013
195) Christie's France SNC v 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 C-41/14

유럽 사법재판소는 피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재판매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령하는 약관의 유효성에 관하여, 2001년 EU 지침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196]

결론적으로 "EU 지침 제1조 4항은 국내법으로 규정된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는 의무자가, 매도인 또는 거래에 참여한 미술시장 전문가를 불문하고, 계약적 합의가 지급자가 저작자에게 가지는 지급의무와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매수인을 포함하는 다른 제3자와 합의하여 그 제3자가 확정적으로 재판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데 사법재판소는 EU 지침의 전문 3, 4, 9, 10, 13 내지 15, 18 그리고 25항의 의미, EU 지침 제1조 1항, 2항, 4항, 그리고 위 지침을 반영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 규정을 해석하였다. 특히 EU 지침 전문 3, 4에 의하면 지침의 목적은 시각 예술가들이 저작물의 경제적 성공을 누릴 수 있기 위함이고,[197] 13 내지 15에 따르면 어디서 저작물이 팔리는지에 대해 발생하는 예술가 사이의 불평등한 대우를 제거하기 위함이고,[198]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제 1조에 따른 재판매보상금이 저작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고 보았다.[199]

위 지침은 전문 4항에 따른 충분하고 기본적인 보호를 위해서 각 회원국은 국내법으로서 지급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1조 4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매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재판소는 이는 일반적으로 매매가 종료되었을 때에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시한다. 그러나, 제 1조 4항 2문을 전문 상술 25와 조화롭게 해석한다면 회원국은 이 원칙을 수정하여 매수인이나 중개인에게 위 지급의무를 지게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015), EU:C:2015:119

196) Directive 2001/8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197) 위 판결, para. 15.

198) 위 판결, para. 16.

199) 위 판결, paras. 17, 18.

나아가 사법재판소는 EU 지침에 의해 재판매보상금청구권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대상은 회원국의 조항에 한정되므로 회원국 간의 국내법상 차이를 모두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며 지급할 책임이 있는 자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나, 누가 확정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조항에서 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200]

바. 대법원

위 유럽 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프랑스 대법원은 2015년 6월 재판매보상금을 매수인이 지급하도록 한 피고 Christie's France의 약관의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여 베르사유 항소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2017년 3월 24일 EU 지침과 이에 대한 해석에 따라 매도지급 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음은 인정하나, 프랑스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매도인의 지급의무를 변경하지 않고 지식재산권법에 이를 입법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은 구속적 성격[201]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위 조항의 구속적 성격에 대해 해석하면서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지정한 것은 국내 업체들 사이의 건전한 시장 경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11월 9일 피고 도록 판매 조건에 명시된 재판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부담하게 한 피고의 약관은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확정되었다.

3. 판결에 대한 평가

프랑스 대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과 달리 피고들의 약관 규정이 저작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은 맥락으로, EU 지침은 원칙상 매도인이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았

200) 위 판결, paras. 29, 30.
201) "un caractère impératif fondé"

으나, 이를 국내입법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가 프랑스 국내법과 달리 약관을 정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단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첫째,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및 그 시행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공개경매에서는 매도인인 경매회사 측이, 그 외에는 매매에 관여한 미술시장 전문가가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특히 복수의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활동으로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매수인이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다만, 위와 같은 규정이 매수인은 지급책임을 절대 지지 않는다는 입법적 의도를 내포하지 않으며, 문언상 이를 배제하거나 또는 오로지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문언상 매도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금지규칙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렇다면, 이 조항이 강행규정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와 달리 정할 수 없는 성격인지가 문제가 된다. 특정 법률 조항이 공공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계약에 의해 포기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조항의 목적이다. 그런데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조의8의 목적은 저작자가 재판매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동 지침이나 프랑스 지식재산법상 다른 목적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누가 재판매 보상금을 부담하는지를 다르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저작자가 재판매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이 확보된다면 이는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당사자 간에 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판매보상금을 취득할 수 있는 양성의 시장에서 작품이 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증진할 수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 EU 지침의 제 1조 제 4항 취지를 간과한 것으로 비판할 수도 있다. EU 지침은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매도인)와 지급 책임을 지는 자(전문가)를 구분하고 있는데, 미술시장 전문가가 개입한 경우 매도인은 전문가를 통해 이를 지급하고 전문가가 보상금을 관리단체

에 지급하는 구조이다. 이는 결국 매도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지침 제 1조 제 4항 문언을 살펴보면, 그 취지는 매도인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하되, 각국은 미술시장 전문가나 매수인 측도 단독으로 의무를 질 수 있다고 2문에서 명시하고 있다.[202] 이러한 취지 역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과 같다. 나아가, EU 지침은 이를 국내법에 반영할 때에 그 한계로 회원국이 채택하는 방식이 정당하고 균형적일 것을 요구한다.[203] 재판매보상금을 매수인에게 부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계약의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를 야기하기 때문에 정당하거나 균형적이라고 할 수 없고 이는 동 지침의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판결은 EU 지침 제 1조 제4항의 취지를 간과한 것이 아니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셋째, 원저작자에 대한 영향에 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는 매수인에게 지급의무를 이전하는 것이 작가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고,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설령 항소심 법원의 주장대로 작가에게 불이익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급의무자에 관한 규정의 해석이 당사자의 합의에 우선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202) 2001/84/EC Directive Article 1 para 4. The royalty shall be payable by the seller. Member States may provide that one of the natural or legal person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ther than the seller shall alone be liable or shall share liability with the seller for payment of the royalty.

203) 2001/84/EC Directive 전문 para. 15
(15) In view of the scale of divergences between national provision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adopt harmonising measures to deal with disparities between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in areas where such disparities are liable to create or maintain distorted conditions of competition. It is not however necessary to harmonise every provision of the Member States' laws on the resale right and, in order to leave as much scope for national decision as possible, it is sufficient to limit the harmonisation exercise to those domestic provisions that have the most direct impact on the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이에 대해 상술한 2017년 WIPO 보고서는 과연 저작권자에게 다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204] 만약 매수인이 재판매보상금의 액수를 예상할 수 있고, 그의 최대 입찰가를 50,000유로로 산정하였다고 가정하면, 매도인이 지급의무자라면 재판매보상금은 2,000유로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매수인이 이를 지불해야 한다면 그의 입찰가 50,000유로 중 1,923유로[205]의 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48,077이 낙찰가가 될 것이고, 1,923유로만이 재판매보상금으로 저작권자에 돌아갈 것이다.[206] 결국 재판매보상금을 반영하여 매수인 측은 입찰가격을 더 낮게 책정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작가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일견 일리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적 경제적인 문제는 법규정 자체의 해석에 따른 사후적인 결과일 뿐이지, 이를 근거로 조항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강행규정이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특히 법 규정 문언상 강행규정이거나, 위와 같은 경제적 영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려는 의도가 없는 이상, 법원이 적극적으로 당사자 합의에 우선하는 법 해석을 섣불리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아가, 설령 법원이 적극적으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EU 재판매보상청구권지침 및 프랑스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저작자가 재판매보상금을 받는 것이지, 누가 확정적으로 지급의무를 지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프랑스 대법원이 저작권법을 해석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이는 이하 설명하는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 간의 경제적인 문제라고 볼 것이다.

넷째, 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 불공정경쟁을 야기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이는 피고의 약관 규정의 유효성 여부와는 다른 층위의 논의이다. 피고의 약관에서 매수인이 지급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은, 저작권법상 매도인의 지급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반하

204) WIPO(주 2), 앞의 글, 19면.
205) 48,077유로에 대한 4%의 재판매보상금
206) WIPO(주 2), 앞의 글, 19면.

는 것인지, 반한다고 하여 약관의 조항이 효력이 없는지가 문제되었을 뿐이다. 프랑스 대법원이 판단한 바와 같이, EU 지침을 반영하여 저작권법 조항으로 도입된 추급권 조항에서 지급의무자를 매도인으로 규정하되, 이를 달리 정할 수 없다고 정하지 않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의 약관 규정은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와 같은 경매회사들과 기타 미술상 사이의 반경쟁적 행위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은, 프랑스 저작권법 관련 규정이 지급의무자를 규정하면서 고려하여야 하는 정책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급의무자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EU 지침이며 이를 반영하여 저작권법 122조의8 제2문에 매수인측, 중개상 등 기타 이해관계인이 지급의무를 질 수도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반경쟁적 행위가 야기된다는 것이 정책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해당 조항을 독일과 같이 내부적으로는 매도인만이 단독으로 지급의무가 있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급의무자에 관한 다양한 입법례에 비추어 보아 이를 경매에 관여한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것인지, 매도인의 단독 지급의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정책적인 문제이다.

제 2 절 추급권 도입과 NFT 미술품 계약

1. NFT 미술품 시장 속 추급권

가. NFT 미술품 시장

추급권 도입 논의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것은 다름 아닌 NFT(Non-Fungible Token) 미술품 시장의 성장이다. NFT란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A 토큰을 B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을 의미한다. NFT 미술품은 NFT가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디지털 미술품에 원본성을 부여해 이를 거래에 활용하면서 발생한 상품이다. NFT에 실제 작품에 관련된 일련 정보, 예를 들어 작품명, 작가명, 계약의 세부 내용, 이미지가 저장된 URL 등이 저장되는 것이다.

최근에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NFT 미술품으로 만들어 온라인 경매로 판매한 사건을 통해 NFT 미술품이 법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위 사건은 NFT를 발행하고 경매를 총괄한 업체가 원저작권자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지 않아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고, 업체들이 경매를 중단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추급권과 관련하여 NFT 미술품이 새롭게 논의되는 이유는, 바로 NFT 미술품계약에서 10%의 재판매보상금이 원저작자에게 지급되는 계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는 추급권이 제도 내로 도입된다고 하더라고 NFT 미술품을 적용 대상으로 삼을지, 삼지 않는다면 이를 고려하여 어떻게 입법하는 것이 조화로운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추급권 관련 조항을 입법하는 데에 NFT 미술품과의 법적 관계를 살펴본다.

나. NFT 미술품 시장의 성장 및 가능성

NFT 미술품은 원래 예술작품이 아닌 인터넷 밈(meme)에 활용되어 이더리움에 거래된 것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착안해 디지털 미술품 작가들은 인터넷상에서 쉽게 복제되어 소유권 입증이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문제를 NFT 기술로 극복해 각 작품의 '원본성'을 부여할 수 있었다. 이는 실물 예술작품의 가치가 '유일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디지털 예술에서 기술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NFT 미술품 시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2020년 10월 최초의 NFT 미술품이 거래된 이후 2021년 3월 초에는 크리스티가 주관한 경매에서 미국의 디지털아티스트 Beeple의 작품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가 약 780억 원에 낙찰되어, 생존 작가 중 세 번째로 비싼 작가가 되었기도 하였다. 현재 NFT 미술품은 하나의 투자대상이 되었고, 시장에 참여하는 작가와 구매자들, 그리고 거래되는 NFT 미술품의 종류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207]

다. NFT 미술품과 재판매보상금

NFT 미술품이 만들어지고 경매되어 구매자에게 이르는 경로는 간략히 다음과 같다. NFT 미술품을 만들기 위해 저작물과 코인, 그리고 코인을 담을 지갑이 필요하다. 저작물의 경우 디지털 미술품은 그 자체를 바로 NFT화하는 민팅(minting)과정을 거치고, 실물 작품은 우선 디지털화한 후에 민팅 과정을 거친다.[208] 이 민팅 과정은 세부적인 설정을 할

---

207) 특히 우리나라에서 마이아트 옥션이 NFT 작품으로 만든 '십장생도'에서 NFT 미술품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제12장 90조)에 의하면 제작 이후 50년을 초과한 미술품 및 문화재는 국외 수출 및 반출이 금지되어 국내에서만 유통되어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NFT화해서 팔면 해외 구매자도 살 수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819&code=13160000&cp=nv>참조 2021.9.11. 최종방문)

208) 국민일보, ""민팅해봤어?"… 중학생부터 기성작가까지 'NFT 아트' 돌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819&code=13160000&cp=nv (2021. 6. 21. 00:14).

수 있는데, 작품의 이름 및 설명, 원본 작품이 있는 곳의 링크, 카피의 수, 그리고 재판매보상금 비율을 입력할 수 있다. 만들어진 NFT 미술품은 경매 및 다른 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하다.

NFT 미술품을 재판매 할 때는 NFT 원작자에게 일정 로열티를 지급하도록 조건을 계약 내에 정할 수 있는데 이는 추급권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NFT 미술품 계약과 추급권 조항의 조화

가. NFT 미술품계약에서의 추급권의 법적 의미

NFT 미술품 계약에서 재판매보상금은 계약 내용 중 일부로 NFT 코드에 작성되므로,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은 그 계약의 내용에 근거한다. NFT 미술품 경매를 포함한 매매에서 이를 코드에 작성하기로 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이에 따라 이후 그 코드에 따라 재판매될 때 자동적으로 원저작자에게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불가능한(immutable) '스마트계약 자체'에 변경이 가해지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209]이 없는 한 그 코드에 작성된 내용에 따라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재 NFT 미술품 매매계약 내용의 한계는 당사자 간 합의이고, 실제로 매수인 측에서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간에 대한 제한 등의 부가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통상 경매 플랫폼이 제공하는 약관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간의 제한이 없는 단일한 요율로의 10%이 보통이다.

나. 추급권 도입 국가에서의 논의

209) 블록체인 기본 기능 자체를 수정하는 하드포크를 하거나, 이더리움의 경우 오라클을 사용한 변경 등을 의미한다.

추급권이 이미 도입된 프랑스에서는 NFT 미술품의 재판매보상금이 10%인 것에 관해 저작권법 제 122조의 8이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추급권 조항 제 122조의8에 의해 준용되는 시행령 제 122조의3에서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f)의 음악, 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점의 복제본까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210] 그러나, 현재 NFT 미술품 계약은 이러한 추급권 조항에 근거하지 않고 스마트 계약을 통해 복잡한 원작품, 경매 플랫폼, 낙찰자 간의 관계에서 그 목적물인 디지털 예술작품과 그 계약사항 자체를 코드에 작성하여 경매에 부친다. 위와 같은 NFT 매매계약상 합의가 저작권법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저작권법상 추급권 조항의 요율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NFT 미술품은 저작권법 제 122조의 8의 추급권 조항과 무관하게 재판매보상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211]

다른 예술가들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고안된 추급권의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NFT 미술품의 저작자는 추급권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된다[212]. 그래픽아트

---

210)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3, 이혜민, 앞의 글, 80-81면.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원판(planches)까지 가능,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epreuves d'artiste) 작품까지 가능,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본 허용,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 허용,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본만 허용, f)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점의 복제본

211) "Non Fungible Token : approche juridique d'une nouvelle pratique sur le marché de l'art Donneriez-vous 69 millions de dollars pour du hash ?", NEXT avocat, (2021. 4. 21.), para. 2.1.
(<https://next-law.fr/2021/04/18/nft-droit-oeuvre-art-token-avocat/> 2021.9.22. 최종방문)

212) "L'oeuvre NFT : un objet fiscal non identifié Eléments de problématique et pistes de réflexion", Journal Spécial des Sociétés (2021. 6. 16.), p. 11.
(<http://artdroit.org/wp-content/uploads/2021/07/Compte-rendu-JSS.pdf>참조, 2021.9.22. 최종방문)

및 조형 미술 보호 협회(ADAGP)가 제안하는 NFT 미술품 계약서의 재판매보상금 조항[213]을 살펴보면 매수인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재판매에서 저작자의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이 존중되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재판매시 프랑스법의 추급권이 NFT 미술품에 적용된다면 법정 추급권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상 추급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매도인은 법정 추급권 및 계약상 요율에 상응하는 재판매보상금을 법정 추급권이 적용된 때에는 작가가 등록된 추급권을 배분하는 중앙관리협회에, 계약상 추급권을 적용할 때에서 작가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결국, 프랑스 작가들의 NFT 미술품이 재판매시 계약상 내용대로 자동적으로 원저작자에게 일정 비율의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다. 다만 ADAGP가 제안한 계약상 내용은 법정 추급권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상 추급권이 적용된다고 보는바, 이는 현재 스마트계약으로 지급되는 재판매보상금의 관행과 반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추급권의 중앙관리집단으로서 NFT 미술품 역시 법정 추급권의 적용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ADAGP의 제안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다. 추급권 미도입 국가에서의 논의

---

213) CONDITIONS GENERALES D'UTILISATION DU NFT ET LICENCE D'UTILISATION DE L'ŒUVRE NUMERIQUE ASSOCIEE 중 제 8.2조 Droit de suite légal ou contractuel 부분, (<https://boischaut.fr/CGU_NFT.pdf>참조 2021.9.22. 최종방문)

8.2. Droit de suite légal ou contractuel

L'ACQUEREUR s'assurera en cas de revente du NFT à un tiers par voie de contrat intelligent ou par voie de transfert de propriété d'un portefeuille électronique décentralisé, centralisé, numérique ou physique du respect du droit de suite de l'ARTISTE.

Si au moment de la revente, le droit français reconnait un droit de suite pour les NFT du type de celui objet des présentes CGUNFT alors ce droit s'applique.

A défaut, un droit de suite s'applique contractuellement, payable à l'organisme de gestion collective auquel est inscrit l'ARTISTE ou à défaut directement à l'ARTISTE, avec taux légal et selon les modalités applicables pour le droit de suite des œuvres physiques au moment de la revente.

기존 추급권 조항과의 관계에서 NFT 미술품의 재판매보상금이 논의되는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이 추급권이 입법되지 않은 미국의 논의를 살펴본다.

미국에서는 재판매보상금이 작가들이 NFT 미술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본다. NFT가 저작자들에게 일응 저작물을 더욱 쉽게 관리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214] 이처럼 소위 영원한 로열티에 대한 관심으로 NFT 미술품이 많이 생산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커스터마이즈된 NFT 미술품 계약에 관한 실무가 많으며, 보상금의 지급 기간 등을 정하는 법률자문의 수요가 많다고 한다.[215] 현재 미국 법제에는 추급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자체에서 저작권과 모든 부수적인 이용계약 등 일체의 법률관계가 정해지고 있다.

결국, NFT 미술품의 재판매보상금은 작가들의 참여에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시장 요소이며, 현재 추급권이 없는 전통적인 예술가들에 비해 NFT 미술품 저작자들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실체가 있는 긍정적인 상품으로 평가된다.[216] 나아가 현재는 NFT 미술품을 판매한 해당 플랫폼에서 재판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앞으로 다른 플랫폼들 사이에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기술적인 과제라고 손꼽힌다. 실제로 NFT가 플랫폼에 구애받지 않고 크로스 플랫폼으로 다차원적으로 거래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소 외에 메타버스나 게임 등에서도 거래되는 것이 현재 확장되고 있는 NFT 시장의 모습이다.

---

214) “Legal issues to watch in navigating the secondary market for NFTs”, Los Angeles & San Francisco Daily Journal (2021. 4. 27.) (<https://www.talksonlaw.com/briefs/how-do-nft-royalties-work>참조 2021.9.22. 최종방문)

215) https://www.talksonlaw.com/briefs/how-do-nft-royalties-work

216) “When NFTs Give More Rights to Artists (Than the Traditional Art Market)”, Yahoo Finance (2021. 7. 16.), (<https://finance.yahoo.com/news/nfts-more-rights-artists-traditional-155000044.html>참조 2021.9.22. 최종방문)

라. 도입될 추급권 조항과의 충돌

현재 계약상 통용되는 NFT 미술품의 재판매보상금과 유럽 국가들이 도입한 추급권 조항은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1) 요율

현재 NFT 저작권자가 재판매를 통해 얻는 재판매보상금율은 통상적으로 재판매금액과 무관한 단일 요율로 10%이다. 이는 추급권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적용되는 단계적 요율로서 최대 5%정도의 요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NFT 시장에서의 재판매보상금이 높게 책정된 것은 위 시장에 진입하려는 창작 의욕을 불러일으키며, 실제로 NFT 시장의 참여자가 증가할수록 더더욱 많은 재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선순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 지급의무자

앞서 경매회사가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에서 지급의무자에 관한 조항의 해석 및 입법 취지를 논의하였다. 이와 달리 NFT 미술품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지급하는 낙찰가액에서 일정 부분이 제외된 뒤에 매도인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바, 결국 중앙관리단체에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를 상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원저작자에게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되므로 간명하게 지급의무자 문제가 해결된다.

3) 적용기간

NFT 미술품 계약서상 원저작자에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적용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최초 판매 후 20년 내 등의 제한을 코드에 적어 기간을 제한하는 계약 등도 실무에서 다루어지는 추세이다.

4) 법정상속인

앞서 살펴본 판례[217]에서 법정상속인만이 추급권의 권리주체가 될 수 있다는 프랑스 법원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은 NFT 미술품에 적용될 바가 아직 없다. 원저작자가 민팅한 작품 자체의 상속은 법정 상속인에게 이루어지는바, 이를 기타 주체에 양도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

NFT 미술품 계약 및 그 내에 코드에 적힌 재판매보상에 관한 계약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수 있다는 등의 별도의 계약을 코드에 적는다면 이를 강행규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베른 협약상 추급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점과 상충되며, NFT 시장에서는 추급권이 계약상 채권으로서 성질을 가지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5) 기술적 제한

NFT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플랫폼은 통상 최초 판매가 이루어진 플랫폼이다. 나아가 재판매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동일 플랫폼 내에서의 거래가 발생할 때로 한정된 것이 대부분이다. 플랫폼 간의 재판매를 기술적으로 가능케 하고 이에 따른 재판매보상금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NFT 미술품 시장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기술적 제한 중 하나이다. 이처럼 NFT 미술품 계약에서의 추급권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마. 계약상 채권으로서 추급권의 의의

추급권은 본래 예술가 간의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발전한 제도임을 상기한다면, NFT 미술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예술가들과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이를 구하지 못하는 예술가 간의 형평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NFT 계약 상의 재판매보상금의 비율은 법정 추급권의 비율보다 월등히 크다는 점 뿐만 아니라, 높은 요율이 NFT 시장의 확장에 크게

217) Salvador Dali 사건 (VEGAP v. ADAGP)

기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NFT 시장에 진입하는 창작자들이 많아질수록, 위 시장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재판매도 증가하여 높은 요율은 결국 더 많은 재판매보상금 지급으로 이어진다. 이는 법정 재판매보상금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예술가들이 제도적으로 얻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하여 법정 추급권 도입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국내 입법안

1. 국내 입법 현황: 미술진흥법 법안

가. 미술진흥법안 연구

베른협약이 발효된 이후, 한-EU FTA 협약 제 10.10조 및 제 10.11조에서 추급권의 국내 입법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였음에도 구체적인 논의는 오랜 시간이 지난 2018년에 정책상에서 가시화되었다. 2018년 '미술진흥중장기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추급권을 도입하고자 하는 정책은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가 아직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학자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추급권 도입에 관한 논의를 해왔고, 2016년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미술진흥법안 연구"는 구체적인 법안의 골격을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18]

첫째, 추급권은 관련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유통업자가 개입한 매매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둘째,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은 이익의 약 20% 내에서 정하되[219], 재판매 가격이 커질수록 요율을 단계적으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셋째, 일반적인 민법상 취소권, 손해배상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의 행사 기간이 사유를 안 날로부터 3년임을 감안하여, 재판매보상금의 소멸시효 역시 재판매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특히 1년은 지나치게 짧고, 5년 이상의 기간은 법률관계의 안정을 고려하여 후속되는 재판매에도 불리하다는 점에서, 재판매 사실을 몰랐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재판매보상금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다만 현실적으로 추급권을 징수하

---

218) 박종현, "미술진흥법안 연구" [내부용역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6. 12.), 63-70면. 이 연구에서 기존의 문화예술진흥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미술진흥법은 특별법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219)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이인 이익이 아닌, 판매가격의 3% 내지 5%의 요율을 적용하는 외국의 조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고 배분하는 중앙관리기관이 있는 경우,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배분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적용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추급권은 재판매되는 횟수와 상관없이 작가 사망 후 50년 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이 아닌 개별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구체적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는 이전 매매에 비해 작품의 거래가격이 상승할 때에만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전의 매매대금의 구체적 가격을 알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220]

다섯째, 재판매보상금의 권리 존속 기간에 관해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면서도 현재 한국 미술품 거래 시장이 투명하고 활발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70년이 아닌 50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추급권의 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조항의 도입 취지 및 Dali 판례에서 드러난 추급권의 성격을 고려하여 타당하다.

나. 미술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내용

최근 국회의원 도종환과 문화체육권광부가 함께 2021. 6. 17. 「미술진흥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 추급권은 사인간의 거래, 화랑, 미술상을 통한 거래를 제외한 2차 시장인 경매시장에 한정하여, 재판매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기로 논의되었다. 다만 업무상 저작물이어서 법인이 저작권을 갖는 경우는 배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추급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로 '정보제공 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생각건대 중앙관리단체를 통해 재판매보상금이 지급되는 구조에서 필수적인 권리이므로 적절하다.

---

220) 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긴 하나, 수익이 없더라도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의 입법을 배제하고 이탈리아와 같이 수익이 있는 때에만 지급하는 방안을 채택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

2. NFT 미술품 계약과의 조화

NFT 미술품 계약상 재판매보상금 비율이 10%로 통상 정해지고 활용되는바, 법정 추급권을 도입할 때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실물 예술작품을 민팅해 NFT 미술품과 동시에 경매하는 경우 법률관계가 다소 복잡해진다. 만약 추급권 조항이 도입된다면, 온라인 경매로 이루어지는 실물과 NFT가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에 실물 저작물에는 추급권 조항에 따른 요율이, NFT 미술품에는 플랫폼 계약상의 요율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플랫폼들은 법률관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코드에 작성되는 계약 내용에 NFT 미술품에는 10%의 재판매보상금의 요율이 적용되고, 실물에 관해서는 위 요율이 아닌 법정 재판매보상금이 적용된다고 명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입법안 제시[221)]

법률안에서는 추급권이 적용되는 판매방식 및 존속기간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222)]

1) 추급권 대상

추급권 대상 미술작품의 범위에 관하여 프랑스 저작권법 시행령[223)]을

---

221) 구체적인 입법안은 추록을 참고.

222) 실제로 프랑스 추급권 관련 적용되는 저작물의 분류, 최거 가격, 적용 요율, 정보제공청구권, 규정은 저작권법 시행령 122조의2 내지 122조의12에 규정되어 있다.

223)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3, 자세한 내용은 이혜민(2017)의 글 80-81면 참조.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원판(planches)까지 가능,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artist's proof/epreuves d'artiste) 작품까지 가능,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본 허용,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 허용,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본만 허용, f)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

참고해 그와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안 연구에서 제시된 정의조항에서 '미술품'은 작가가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해 산출한 유 무형의 작품이라고 규정하는바[224], 부칙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2) 추급권 적용 기한

대부분의 나라가 원저작권자 사망 다음 해부터 70년간의 추급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의 미술품 시장의 성숙도 및 관리체제의 미비를 고려하여 이보다 짧은 50년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은 20년으로 규정하기도 하였는바, 향후 추이를 보아 개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3) 추급권료 추심기관 및 수급과 지급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중앙 관리단체를 두고, 정보와 재판매보상금의 지급 방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단체에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4) 정보공개 의무화 여부

정보제공 청구권을 도입하는 것이 거래의 투명성 및 재판매보상금 지급 청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영국, 독일 모두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대상이 되는 최저·최고 판매가

점의 복제본

2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술"이란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행위예술 등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는 일련의 예술활동을 말한다.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의 창작물을 말한다.

재판매 가격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된바, 프랑스 및 영국에서 책정된 최저 판매가인 750유로와 1000유로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6) 추급료 비율 산정

단일요율이 아닌 단계적 요율을 적용하면서, EU지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225]

7) 적용 대상 판매방식

미술진흥법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저작물의 최초 판매 이후 신고한 미술품 유통업자가 매도인이 되거나 타인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재판매보상금이 적용되는 매매로 볼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매매는 이를 추적할 수 없고 정보의 투명도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8) 처벌규정

처벌 규정에 관하여, 부칙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이 없거나, 추급권이 미납된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더 나아가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입법은 더욱 논의가 필요하다.

---

225) 유럽 지침 참고. (1) 1,000~50,000유로는 4%, (2) 50,000.01~200,000유로는 3%, (3) 200,000.01~350,000유로는 1%, (4) 350,000.01~500,000유로는 0.5%, (5) 500,000유로 이상은 0.25% 이다.

제 5 장 결론

추급권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답보상태에 있었는바, 최근에는 미술진흥법의 추급권 관련 조항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본고는 20여 년간 논의된 추급권 제도가 실효적으로 입법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역사, 법적 의미, 해외 입법례 및 입법 논의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추급권 조항이 국내에 입법될 때에 필연적으로 논의될 지급의무자 조항에 관한 프랑스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여 평가하였고, 법정 추급권이 도입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원저작권자들에게 재판매보상금을 지급하는 NFT 미술시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연구된 미술진흥법안의 골자에 수정을 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그 발단은 저작 인격권에 근접하였으나, 현재는 예술가들의 평등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보장적인 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사후추급권이 법정상속인에 귀속되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밝힌바, 국내 입법 시에 이와 같은 태도를 반영할지 논의되어야 한다.

둘째, 지급의무자를 매수인으로 정한 경매회사와 프랑스 골동품조합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유럽 사법재판소 및 프랑스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지급의무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이는 프랑스 저작권법 조항의 문언 및 유럽지침의 해석에 근거한 판단이며, 단지 경제적으로 2차 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이 시장 지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에 불과하고, 특별히 유럽지침의 목적을 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위 결론에 따라 국내 입법 시에 매도인을 우선적인 지급의무자로 규정하더라도, 경매회사들이 약관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고, 매도인을 지급의무자로 정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NFT 미술품 시장의 성장으로 추급권이 실제로 계약상으로 도입되었고, 추급권 조항이 입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인 충돌은 없을 것으

로 보인다. NFT 미술품의 매수인은 원저작자가 코드에 작성한 대로 계약상 재판매보상금이 포함된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러한 재판매보상금에는 일반 법정 추급권 조항보다 더 높은 요율인 10%가 적용될 것이다. 나아가, NFT 미술품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은 실물과 NFT 미술품이 동시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예술품 자체에 관해서는 계약상 권리가 우선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NFT 미술품 계약에서 지급되는 재판매보상금은 법적 권리로서 추급권이 아닌 계약상 채권으로서 추급권이 실효성을 갖는 사례이며, 역으로 법적 추급권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2016년 자 미술진흥법안 연구에서 제시된 법률안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앞서 살펴본 해외 입법안을 참고하였고, 법률안 및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부칙까지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추급권에 관한 국내 논의를 정리하고 앞으로 추급권 조항이 입법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부 록

1. 법률안

제N조(미술품판매에 대한 재판매보상금)

① 작가가 미술품을 창작하여 최초로 판매한 이후 당해 미술품이 다시 매매(「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유통업자가 매도인이 되거나 타인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 한한다)(이하 “후차매매”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경우 작가는 후차매매의 매도인에게 시행령에서 정한 요율에 따른 이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후차매매의 매매대금이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후차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후차매매의 매매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당해 후차매매에 관하여는 이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차매매의 매매대금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이익의 배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권리는 후차매매의 회수와 상관없이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 간 존속한다. 작가가 사망한 경우 작가의 상속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상속 비율에 따라 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위 범위 내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제1 항의 권리는 소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이익 중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제L조에 따른 미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OO호, 20XX.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작가보상금제도 시행을 위한 경과조치)

제N조(미술품판매에 대한 재판매보상금)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하되, 후차매매가 그 적용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매매대금 지급 완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시행령[226]

제M조

위 법 제N조의 '미술품'은 다음을 말한다.

a) 한정판 판화, 프린트, 석판화 작품은 하나 혹은 몇 개의 원판까지 가능

b) 조각 작품의 에디션은 12점에 한해 번호가 매겨진 최초 시험 인쇄본 작품까지 가능

c) 원작을 모델로 한 핸드메이드 태피스트리와 텍스타일 작품은 8점의 복제본 허용

d) 작가가 서명한 핸드메이드 에나멜 작품은 8점의 복제본과 4점의 최초 시험 인쇄본 허용

e) 작가가 서명한 사진 작품은 사이즈와 미디어 관계없이 30점의 복제본만 허용

f) 음악·영상 이미지나 디지털 미디어 관련 조형 미술 창작품은 12점의 복제본. 단, 디지털 미디어 관련 창작품에 관한 대체불가토큰에 관한 계약에는 계약 내용이 우선한다.

---

226) 구체적 내용을 추가, 변경할 수 있으니, 적용 대상의 범주와 단계요율제의 골자를 제시하였다.

제L조

위 법 N조 제 1항 단서의 금액은 100만 원이다.[227]

제K조

위 법 제 N조의 재판매보상금은 판매 가격이 X원 이하인 경우 N조 3항에 정의된 판매 가격의 4%이다. 판매 가격이 X원[228] 이상일 경우 재판매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X+1원에서 Y원 사이의 판매 가격의 3%;
Y+1원에서 Z원 사이의 판매 가격의 1%;
Z+1원에서 W원 사이의 판매 가격의 0.5%;
판매 가격이 W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25%.

단, 후차매매시 지불해야 하는 재판매보상금은 1,7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229]

227) 약 750유로에 준하는 금액.
228) 구체적인 금액은 당시 사정에 비추어 정할 수 있다. 2006년 EU 지침에 비추어 X, Y, Z, W은 각각 5만유로에 준하는 약 6850만 원, 20만 유로에 준하는 약 27억 4000만원, 35만 유로에 준하는 약 48억원, 50만 유로에 준하는 약 68억 6천만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229)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Partie Réglementaire, Article R122-5, 50만 유로의 0.25%인 12,500유로에 준하는 금액.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단행본

정상조・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5판, 홍문사 (2020).

캐슬린 킴, 『예술법』, 학고재 (2013).

(2) 논문

계승균, “독일저작권법상 추급권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통권 제48호 (2009).

김경숙, "미국에서 추급권 도입을 위한 논의의 동향", 고려법학 통권 제76호 (2015).

김원오, “EU 및 그 주요 회원국의 추급권 입법 동향”, 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7).

김인철, “미국 저작권법상의 종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법학논고 제49집 (2015).

나강,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최근 해외 동향 및 사례 연구." 법학논총 제26권 제3호 (2014).

박경신, "미술품재판매보상금 지급의무자에 대한 검토 -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제31권 제2호 (2018).

안경환, “미술저작물 저작자의 추급권”, 계간 저작권 제1권 제4호 (1988).

윤성근, "2015년- 2016년 국제거래법 분야 중요판결 소개." 국제거래법연구 제25권 제1호 (2016).

윤희윤,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비교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n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in Major Countrie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4권 제4호 (2010).

이동기・김솔하, “유럽의 추급권 제도 운영과 우리나라에의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22권 1호 (2009).

이윤정, “추급권(Artist's resale right)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2007).

이혜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추급권(Droit de Suite) 도입에 대한 국가별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7. 8).

임지봉, “법률의 체계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과제”, 법학논총 제45집 (2019).

홍승기, “저작권계약 수정요구권 입법론에 대한 반론”, 계간 저작권 제30권 제 1호 (2017)

(3) 기타

국회입법조사처, “미술품 추급권(Resale Royalty Right)의 도입과 과제”, NARS 현안분석 제81호 (2019. 11. 21.)

문화체육관광부・(재)예술경영지원센터, “2020 미술시장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20. 12.).

박종현, “미술진흥법안 연구” [내부용역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6.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의 추급권 도입 논의와 시사점”, 문화예술지식 DB 문화돋보기 제25호 (2016. 7.)

한국저작권위원회, “Salvador Dali 사건(추급권)에 대한 유럽 재판소의 EU 지침 해석과 파리 지방법원 판결”,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15호 (2010. 8.)

_____, “시행 1년을 맞은 호주 추급권 제도”,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 Copyright Issue Report 제16호 (2011. 8.)

_____, “저작인격권에 대한 연혁적 분석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11.)

2. 영미문헌

(1) 논문

David S. W. Ma, “Right to Integrity and the Proposed Resale Royalty Right and Notification Right in the PRC Copyright Law”, 49 Stan. J. INT'l L. 477 (2013).

Kalyatin, Vitaliy, and Erik Valdes-Martines. "Droit De Suite Convention: To Be or Not to Be?" 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29.2 (2020).

Krestinger, Marilyn J., “Droit de Suite: The Artist's Right to a Resale Royalty”, 15 Hastings Comm. & Ent. L.J. 967 (1993).

Lorie M. Graham & Stephen M. McJohn, “Intellectual Property's First Sale Doctrine and the Policy Against Restraints on Alienation”, 7 Tex. A&M L. Rev. 497 (2020).

Michael Reddy, “The Droit de Suite: Why American Artists Should Have the Right to a Resale Royalty”, Loyola L.A.Ent.L.J. 509 (1995).

Price, Monroe E., “Government policy and economic security for artists: The case of the Droit de Suite." Yale LJ 77 (1967).

Ricketson, Sam., “Proposed international treaty on droit de suite/resale royalty right for visual artists", Revue Internationale de Droit d’Auteur 3 (2015).

Siegelaub, Seth, “The Artist′s Reserved Rights Transfer and Sale Agreement.″ Leonardo (Oxford) 6.4 (1973).

Solow, John L., “An Economic Analysis of the ‘Droit de Suit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2 (1998).

Stanford, J. D., ″Economic Analysis Of The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Australian Economic Papers 42.4 (2003).

(2) 기타

Berne International Office, “Actes de la Conférence réunie à Rome du 7 mai au 2 juin 1928”, Berne International Office (1929).

U.S. Copyright Office, “Resale royalties: an updated analysis”, U.S. Copyright Office (2013. 12.).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GUIDE to the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Paris Act, 1971)”,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978).

_____,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ARTIST’S RESALE RIGHT”,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17).

Yi Shan Tang & Qian Qian GAO, “The Artist’s Resale Right Dispute: A Case Study of China, EU and US”, EU연구 통권 제51호 (2019).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Droit de Suite: The Artists Resale Royalty”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1992. 12. 1.).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Docket No. 2012–10], Federal Register. Vol. 77, No. 182, Wednesday, September 19, 2012,

Notices

3. 중국문헌

國家版權局, “關于《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修改草案第二稿) 修改和完善的簡要說明”, (2012. 7.). http://www.gov.cn/gzdt/2012-07/10/content_2180033.htm

4. 판례

Baby Moose Drawings, Inc. v. Dean Valentine et al., 2011 U.S. Dist. LEXIS 72583 (C.D. Cal. 2011).

CA Paris, pôle 5, ch. 4, 12 déc. 2012, n° 11/12887.

Christie's France SNC v Syndicat national des antiquaires, C-41/14 (2015), EU:C:2015:119

Close v. Sotheby's, Inc., 894 F.3d 1061 (9th Cir. 2018)

Commentaire de la décision n° 2012-276 QPC du 28 septembre 2012, Fondation Hans Hartung et Anna Eva Bergman

Décision n° 2012-276 QPC du 28 septembre 2012, ECLI : FR : CC : 2012 : 2012.276.QPC

Fundación Gala-Salvador Dalí and Visual Entidad de Gestión de Artistas Plásticos (VEGAP) v Société des auteurs dans les arts graphiques et plastiques (ADAGP) and Others., (C-518/08), [2010], E.C.D.R. 13 (15 April 2010), ECLI:EU:C:2010:191

Morseburg v. Balyon, 621 F.2d 972 (9th Cir.), cert. denied, 449 U.S. 983 (1980)

TGI Paris, 3e ch. 2e sect., 20 mai 2011, n° 09/10883.

5. 인터넷 자료

국민일보, ““민팅해봤어?”… 중학생부터 기성작가까지 ‘NFT 아트’ 돌풍”,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6819&code=13160000&cp=nv (2021. 6. 21. 00:14).

CONDITIONS GENERALES D’UTILISATION DU NFT ET LICENCE D’UTILISATION DE L’ŒUVRE NUMERIQUE ASSOCIEE
https://boischaut.fr/CGU_NFT.pdf

“Legal issues to watch in navigating the secondary market for NFTs”, Los Angeles & San Francisco Daily Journal (2021. 4. 27.)
https://www.talksonlaw.com/briefs/how-do-nft-royalties-work

“L'oeuvre NFT : un objet fiscal non identifié Eléments de problématique et pistes de réflexion”, Journal Spécial des Sociétés (2021. 6. 16.).
http://artdroit.org/wp-content/uploads/2021/07/Compte-rendu-JSS.pdf

“Non Fungible Token : approche juridique d’une nouvelle pratique sur le marché de l’art Donneriez-vous 69 millions de dollars pour du hash ?”, NEXT avocat, (2021. 4. 21.).
https://next-law.fr/2021/04/18/nft-droit-oeuvre-art-token-avocat/

“Press Release: The Art Basel and UBS Global Art Market Report 2019”, Art Basel (2019. 3. 8.)
https://www.artbasel.com/news/art-market-report

“When NFTs Give More Rights to Artists (Than the Traditional Art

Market)", Yahoo Finance (2021. 7. 16.)
https://finance.yahoo.com/news/nfts-more-rights-artists-traditional-155000044.html

6. 국제조약

1886년 「베른협약」 (Convention de Berne pour la protection des œuvres littéraires et artistiques).

Abstract

Legal Implications for Domestic Legislation of *Droit de Suite* from Berne Convention

Kim, So Yeon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Droit de suite, or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 gives right to authors to benefit from further resales after his own. Such right was first coined and recognized in France back in the 1920's, and now in more than 90 countries worldwide, by its introduction in the Berne Convention, and successive introduction by the EU.

Legislation of the Droit de Suite in Korea has been triggered by the Berne Convention, though only declarative and optional. However, EU-South Korea FTA has brought the issue back on the table, but still with no practical further progress.

With the advent of NFT artworks and their automatic resale royalty right clauses embedded in their smart contracts, the necessity of the legislation of Droit de Suite has been reviewed. Thus, this paper focuses on a thorough research on first, the history and legal character of Droit de Suite, second, interpret relevant provisions from Berne Convention for in-depth understandings. Third, the successful

legislation of this right of other countries is examined to shed light on legal issues that must be answered prior to its domestic legislation. In addition, the case whether the seller has the obligation to pay the resale royalty between Sotheby's and SDA is analyzed. Moreover, the new market of NFT artworks and its contractual resale royalty right is reviewed, which is to be consider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roit de Suite.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draft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hope of giving insight to legislators and more. It is not of the choice of whether to introduce droit de suite in this moment, but rather the legal issues and implications should be addressed for practical and fruitful legislation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Droit de suite, resale royalty right, NFT, NFT art, legislative proposal, Berne convention
Student Number : 2019-24818